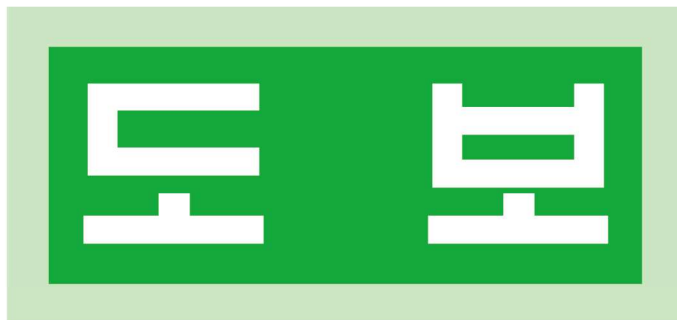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5060 호

2024. 2. 16(금)

규 칙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00호	강원특별자치도 법무사무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	3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01호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	23
강원특별자치도교육 규칙 제904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7
강원특별자치도교육 규칙 제905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85

입 법 예 고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7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0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8호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94

고 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65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철도) 결정(변경) 고시	98
----------------------	------------------------------------	----

공 고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78호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산업시설용지 분양 재공고	101
-----------------------	-----------------------------	-----

회 람								
--------	--	--	--	--	--	--	--	--

발행: 대 변 인 실 (TEL: 033-249-2054, FAX: 033-249-4091)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85호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공개 모집(안)	 128
-----------------------	-------------------------	-----------

시 군 행 정

춘천시 고시 제2024-73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40
원주시 고시 제2024-50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일반광장802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42
원주시 고시 제2024-51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관설 반도 유보라) 지형도면 승인고시	 143
원주시 고시 제2024-52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원동 나래지구) 지형도면 승인고시	 147
원주시 고시 제2024-53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주차장83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50
원주시 공고 제2024-393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1-7호 외2개소)사업 공사완료 공고	 151
강릉시 고시 제2024-59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사천진리 공동주택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52
강릉시 고시 제2024-6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155
강릉시 고시 제2024-67호	강릉 개발촉진지구 썬크루즈리조트 조성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164
영월군 공고 제2024-19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해제(안) 열람 공고	 176

규 칙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1. 22.)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법무사무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2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00호

강원특별자치도 법무사무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법무사무처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훈령·예규 등의 심사, 자치법규 질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과 그 밖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부서를 말한다.
2. “법무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의 심사·공포 등 법제 행정사무를 분장 받은 부서를 말한다.
3.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심의회”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조례·규칙심의회를 말한다.
5. “질의”란 법령, 자치법규 등을 집행·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법제사무

제1절 자치법규 입법안 작성 및 심사

제3조(사전협의·평가 등)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제6조에 따른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자치입법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협의·승인 등
2.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규제심사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4.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5.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6. 그 밖에 타 부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적정 여부

제4조(입법예고) 주관부서장은 자치입법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입법예고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이하 “법무부서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자치법규안 작성) 주관부서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법제심사) 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관련부서 등 사전협의 결과(사회보장제도 협의, 규제·부패·성별영향평가 등)
2.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 법제심사 요청서
3. 별지 제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4. 별지 제3호서식 입법예고문, 별지 제4호서식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5. 그 밖에 방침결정서, 표준안, 협조공문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주관부서장은 심의회 개최일 20일 전까지 법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입법안의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제7조(심사방법 및 보완)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는 주관부서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입법안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 실효성, 체계적합성 등의 적정 여부와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 가. 구비서류 적합 여부
- 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
- 다. 입법예고 실시 여부와 기간 및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 법무부서장 협의 여부 등
-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 여부

2. 실질적 심사

- 가. 입법목적에의 적합 여부
- 나. 구성 체계 및 사용된 용어의 적합 여부
- 다. 입법한계의 일탈 여부
-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 마. 자치법규안의 실현가능성 등

② 법무부서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주관부서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서장은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법무부서장은 입법안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하며, 주관부서장은 명백한 오류 등을 제외하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법무부서장에게 심의회에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훈령·예규 심사)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무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고시문
2. 훈령·예규문서
- ② 훈령·예규문서의 심사에 관해서는 제6조 및 제7조를, 발령절차는 제19조를 준용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대한 심사방법은 주관부서와 법무부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절 조례·규칙심의회

제9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지사·경제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본부장·대변인·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정책기획관이 된다.

-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순서로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지사·경제부지사,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및 직제 상의 순으로 한다.

제10조(회의운영 등)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안건은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재의요구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도지사가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5. 그 밖에 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도지사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본질적 내용의 변동 없이 수정 의결된 경우
 2. 폐기된 안건을 다시 도의회에 상정하거나 자구 등 경미한 사항만 수정하여 상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조문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안건제출) ① 심의회 위원과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규정된 직속기관 및 출장소의 장은 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소장 등이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을 통하여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안건은 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서장은 제출된 안건의 목록을 작성하고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상정안건 목록 1부
 2. 상정안건 각 1부

제13조(제안설명) ① 안건을 제출한 주관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취지와 배경 및 안건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등)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서장이 맡고, 서기는 법제심사 업무팀장이 한다.

② 간사는 조례·규칙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등) 간사는 회의가 개최 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한 후 보관해야 한다.

제16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 ①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규칙안은 도지사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법무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조례안을 첨부하여 도의회에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보고 해야 한다.

제3절 자치법규 공포 방법 등

제17조(이송 조례안의 처리) ① 법무부서장은 도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례안을 통보받은 법무부서장과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법무부서장: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2. 주관부서장: 공포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 결정

제18조(공포안 작성) ① 도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안은 자치입법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무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재의요구하기로 의결한 조례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포전문
2. 공포문

②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전보고 한 규칙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
2. 공포문
3. 통보문(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제19조(자치법규 번호 등) 법무부서장은 도지사 결재를 받은 조례·규칙 공포문안에 자치법규 번호를 부여한 후, 공포문을 대변인에게 송부하여 도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장에게도 통보한다.

제20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내용을 관계공무원에게 교육하고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규칙의 의회 제출) ① 자치입법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안 제출은 주관부서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포안 제출은 법무부서가 각각 도보게재 의뢰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로 한다.

② 주관부서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가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의견을 통보받은 때에는 법무부서로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절 자치법규 질의 및 회신

제22조(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장이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법무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

1. 질의 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법무부서장은 주관부서장에게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및 사업소장이 질의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강원자치도의 주관부서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제23조(질의대상)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서장에게 자치법규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2개 업무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의견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24조(회신) ① 법무부서장은 제23조에 따른 주관부서장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법무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강원자치도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1.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회신하였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

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② 사업소장·시장·군수 또는 민원인이 법무부서장에게 한 질의는 강원자치도의 주관부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관련 주관부서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무부서장의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장에게 이송한다.

제5절 시·군의 자치법규

제25조(사전보고) 시장·군수는 법 제35조에 따라 시군의 자치법규안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고서식 1부(별지 제9호서식)

2. 조례 또는 규칙 전문(제·개정 및 폐지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대비표 및 그 밖의 참고사항 포함) 1부

제26조(의견조회) ① 시장·군수가 법 제35조에 따라 시군 자치법규안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경우 법무부서의 장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내어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군 자치법규안이 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경우 법무부서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검토결과 통보 등) ①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시군 자치법규안의 위법·부당여부를 검토하고,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법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결과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시·군 자치법규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하면 공포 예정일 5일 전 까지 법무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법 제192조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에게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재의요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8조(시·군 자치법규의 입안지원) ① 주관부서장은 시·군 입법안을 지원하거나 강원자치도 전체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표준안·지침 등을 작성·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표준안·지침 등에 대하여 법무부서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안의 심사는 도의 자치법규 심사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한다.

제6절 자치법규 정비 및 포상

제29조(지정입법) ① 법령 개정 등으로 입법이 필요한데 주관부서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장이 주관부서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서장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예규 등의 공표 또는 시행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정비수요 조사) ① 법무부서장은 자치입법조례 제23조에 따른 정기적인 정비를 위해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 정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수요조사를 주관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상위법령 제·개정내용 미반영 사항
2. 상위법령 위반 사항
3.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범위를 벗어난 규제 사항
4.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사항
5. 시효가 완성되는 등 적용대상이 없는 사항
6.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규 정비기준 미반영 사항
7.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및 정비일정·계획을 실국의 방침을 받아 법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연도별 정비계획 수립) ① 법무부서장은 주관부서로부터 제30조에 따른 정비수요와 정비계획을 통보받은 이들을 종합하여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에 추진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장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관부서장과 입법 추진일정, 중복·상충되는 사항, 일괄개정 방법 등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제32조(포상) ① 자치입법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으로 하며, 공무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여 각각 연 3명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8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입법예고 하여 입법과정에 있는 자치법규등은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법무사무 처리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법무사무 처리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 법제심사 요청서 (제6조 관련)

입 법 형 식	[] 조 례 [] 규 칙 [] 훈 령 [] 예 규		
자치법규명		최근 개정일	20 . . .
입법 방식	[] 제 정 [] 전부 개정 [] 일부 개정 [] 폐 지		
상위 법령		최근 개정일	20 . . .
향 후 계 획	【 자치법규 법제심사 기간(최소 20일 소요)을 참고하여 계획 수립 】 - 입법예고(20일 이상) : 20 . . . (매주 금요일 도보 발행) ※ 입법예고기간 중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 협의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 . . . (심의회 개최 7일 전) - 도의회 상정(조례) : 20 . . . (도의회 개최 10일 전) - 시행예정일 : 20 . . .		
제정·개정·폐지 사유	• •		
주관부서		담당자	(☎ :)
○ 불임 서류 1. 산·구조문대비표 2. 관련 법령 발췌 3. 비용추계서 사유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4. 그 밖에 법제심사에 필요한 서류(관련 지침, 보고전 등)			

■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6조 관련)

부서 점검 항목	부서 점검결과
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는지?	
◦ 없다	☐
◦ 있다	☐
② 정책 실현을 위해 자치법규가 필요한지?	
◦ 불필요	☐
◦ 필요	☐
③ 상위법령 / 정책과 관련된 자치법규가 이미 있는지?	
◦ 없다 ➡ 자치법규 제정 검토	☐
◦ 있다 ➡ 자치법규 개정 검토	☐
④ 입안해야 할 자치법규와 관련된 사무는?	
【판단기준】 ◆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 포함) 판단기준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사무 - 개별법령에서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권한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 경비부담,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제 등에 비추어 국가사무로 볼 수 있는 사무 ◆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 포함) 판단기준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사무 -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권한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기관위임사무, 자치사무(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 ➡ 규칙 제정·개정 검토	☐
◦ 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조례 제정·개정 검토	☐
⑤ 제정·개정하려는 자치법규와 관계된 상위법령이 있는지?	
◦ 없다	☐
◦ 있다 ➡ 상위법령 위반 검토, 법령과 조례의 목적 동일 여부 확인	☐
⑥ 제정·개정하려는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지?	
◦ 없다	☐
◦ 있다 ➡ 법령의 위임 여부 및 위임범위 내인지 검토	☐
⑦ 집행기관의 권한행사에 의회가 관여하거나 제약하는 사항이 있는지?	
【판단기준】 ◆ 집행기관의 권한이 법령에 의해 전속적으로 부여된 경우 → 법령에 위임규정이 없는 한 집행기관의 권한을 제약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규정 신설 불가 ◆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인사권,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해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부서 점검 항목	부서 점검결과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개인자격으로 개입하는 것인지(예: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원을 추천)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 없다	☐
◦ 있다 ➡ 견제와 균형 법리 검토	☐
⑧ 자치법규의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는지?	
◦ 없다 ➡ 공포일 시행	☐
◦ 있다 ➡ 시행 유예 검토	☐
⑨ 기존의 제도를 변경하는 조문이 있는지?	
◦ 없다	☐
◦ 있다 ➡ 부칙에 경과조치 / 적용례 검토	☐
⑩ 새로 신설되는 제도가 있는지?	
◦ 없다	☐
◦ 있다 ➡ 부칙에 적용례 검토	☐
⑪ 자치법규 제정·개정에 따라 다른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 없다	☐
◦ 있다 ➡ 다른 자치법규의 폐지/개정 검토	☐
⑫ 공청회 등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한지?	
【판단기준】 ◆ 법정절차인 입법예고 외에도 별도 의견수렴 필요한지 여부 검토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2항, 공청회 실시요건 -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30명 이상의 당사자들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 상위법령 및 필요성 검토	☐
⑬ 법령의 체제와 문장 작성원칙은 준수하고 있는지?	
◦ 상위법령의 규정 순서를 따르고 있는지?	☐
◦ 자치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관성이 있는지,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모순되는 점은 없는지?	☐
◦ 불명확한 내용은 없는지?	☐
◦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의 인용조문은 맞는지?	☐
◦ 문장과 용어가 국어어법에 맞는지?	☐
◦ 어려운 용어, 차별적 용어, 외래어 또는 일본식 표현이나 축약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
◦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 어졌는지?	☐

■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3호서식]

입법예고문(제4조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호

「○○○○조례(규칙)」를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개정·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 제 정: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폐 지: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전부개정: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예) 세계화·지방화 등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능률적인 시 조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일부 기관을 개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 ○○○○ ○○○○ ○○○○
 나. ○○○○ ○○○○ ○○○○ ○○○○
 다. ○○○○ ○○○○ ○○○○ ○○○○
 라. ○○○○ ○○○○ ○○○○ ○○○○
 마. ○○○○ ○○○○ ○○○○ ○○○○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건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중앙로 1 ○○○○○○○○

- 전 화: (033) 〇〇〇-〇〇〇〇
- 팩 스: (033) 〇〇〇-〇〇〇〇
- 전자우편: 〇〇〇〇〇〇@korea.kr

4. 붙임

- 〇〇〇〇조례(규칙) 일부개정(전부개정·폐지)조례(규칙)안
- 규제영향분석서*(신설·강화되는 규제 조문이 있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 * 2024년 6월 8일부터는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공표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말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4호서식]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제6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사 항
	○	○ 미반영 — —
	○	○ 미반영 — —
	○	○ 반영 — —

■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5호서식] (제7조제4항 관련)

조례·규칙안 심사결과

제 명 :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건 및 보 완 할 사 항
1. 자치입법의 근거	
2. 필요성 및 이유	
3. 조문구성의 적정성	
4.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 방침결정 ○ 중앙부처의 사전승인·허가·협의 및 시달사항 (관계법령) ○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합의·협의 등의 사항 ○ 입법예고(또는 청문회) 실시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5. 법질서의 안정성 ○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의 저촉여부 ○ 행정편의 위주 및 새로운 규제의 창설 ○ 인·허가등 기준의 적정여부 ○ 벌칙,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성 및 행정 처분에 대한 구제장치 (불복절차 등) ○ 경과조치, 적용례의 적정성 (기득권의 존중여부 등) ○ 공포일과 시행일의 유예기간 필요성 ○ 소급적용의 적정성	
6. 종합심사의견	

■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6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제12조 관련)

가. 표지의 작성

글자 크기는 15포인트 기준, 신명조체

안건번호	제 ① 호	심 의 의 결 사 향
의결연월일	20** . ② . (제 ③ 회)	

- ① 안건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하며, 작성 시 기재하지 아니함(법무부서 일괄 기재)
②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심의 연월일 : 작성 시 기재하지 아니함(법무부서 일괄 기재)
③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작성 시 기재하지 아니함(법무부서 일괄기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개정·폐지조례안 ④

- ④ 안건제명 : 글자크기는 17포인트, 신명조체, 진하게, 제명은 일부개정, 전부개정 등

제 출 자	○○○국장○○○ ⑤
제출연월일	

- ⑤ 안건제출위원 : 직위와 성명을 쓴다.

법무부서장 심사필

나. 제정·개정 및 폐지문안의 작성

1. 의결주문

○○○조례안(개정안, 폐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

3. 주요내용

가.

나.

다.

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일부개정에 한함)

다. 입법예고(○○○○.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있을 경우에는 결과 요약서 : 붙임)

■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7호서식]

○○○○조례 (개정, 폐지) 조례안(예시) (제16조 관련)

안건 번호	
----------	--

제출년월일 : . . .

발 의 자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

2. 주요골자

가.

나.

다.

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일부개정에 한함)

다. 입법예고(○○○○.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있을 경우에는 결과 요약서 : 붙임)

■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8호서식]

자치법규 심사심의대장(제7조 관련)

[illegible]

* 심의결과 란은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9호서식]

조례(규칙)제정 · 개폐 현황보고(제25조 관련)

(○○ 시 · 군)

자치법규 명			
종 류	제정(), 개정(), 폐지()		
제 안 자	시장 · 군수(), 의회의원()		
조례 · 규칙심의회	제 회 조례 · 규칙심의회 (년 월 일)		
의회의결일		이 송 일	
공포기한 (예정일)		재의요구기한	
근 거 법 령			
시 · 군 주관부서			
제정 · 개폐사유			
주 요 내 용			
검 토 의 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3. 11. 3.)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며, 법제 사무와 소송 사무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규칙으로 분리 규정하고자, 소송 사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1. 22.)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2월 1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01호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사건”이란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지사(소속 행정기관·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라 한다)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민사소송·헌법소송·중재사건·신청사건 등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송 중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도가 수행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강원특별자치도(소속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송사건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법무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소송사건의 조정·통제 사무를 분장 받은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소송을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민사소송을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과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제2장 소송의 수행

제3조(소송사건의 주관)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장이 수행한다.

② 법무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수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실·과·소 등에 관련되는 소송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주관부서장은 즉시 이를 법무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장은 소송수행 방침결정, 답변서 작성, 처리기한 등을 명기하여 사본을 주관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지정되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부서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부서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모든 소송문서는 법률에서 정한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부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할 때는 1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하거나 상소를 포기할 때는 상소기일 4일 전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 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 확인을 위하여 접수, 기안, 결재, 협조, 조회, 발송 등을 할 때는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의 착수) ① 주관부서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 등은 즉시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주관부서장은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認諾) 및 조정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방침을 법무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 결정 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지명 및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 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에 참고자료

③ 법무부서장은 소송의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을 포함한 공무원 2명 이상과 법무부서 소속 공무원 1명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변호사건
2.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
3.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고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판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5. 소송의 결과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송

제8조(소송비용 등) ① 제7조제4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제소사건 관련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 관련 답변서를 관할 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에 착수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소사례금은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가액이 현저하게 크거나 도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법무부서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지명 또는 선임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

② 법무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3.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③ 직원 인사발령, 대리인 교체 등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제10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자료 수집·조사
2.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3.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제출
4.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진술
5. 소송기록 작성·유지관리
6. 그 밖에 위임된 사항 및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에 대하여 적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
2. 변론, 신고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③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은 법무부, 국가소송은 관할 검찰청에 보고 및 사전지휘 요청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소의 제기) 주관부서장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분석·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소 제기의 이익과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의 제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되, 법무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 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상소포기) 주관부서장은 판결에 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거나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전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이해관계인 소송고지) ① 주관부서장은 소송사건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소송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주관부서장에게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협조를 얻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도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주관부서장은 소송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도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주관부서장은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 상단에 수령일시·성명·불변기일을 기입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판결문을 접수하거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결과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판결문의 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상소 여부, 가집행 정지 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소송대응 계획이나 방침을 법무부서와 협의하여 수립하되 법무부서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이 확정되면 입증자료로 제출된 원본 등 중요한 문서 등을 회수하고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소송확정 후의 조치

제17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주관부서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을 위하여 승소(소취하 포함)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은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 법무부장관 및 관할 검찰청장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여부에 대한 사전 지휘를 요청해야 하고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관할 법원에 신청 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서장은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기각 또는 일부 인용된 경우 확정결정이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 및 관할 검찰청에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지휘를 신청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장은 법무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해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일부 승소 등 사유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

청하지 않는 경우

6.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7. 회수해야 할 비용이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
8. 그 밖에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8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주관부서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4.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건의
5.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의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구상권 행사) ① 주관부서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구상권 행사 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4장 직무관련사건

제20조(지원신청) ① 직무관련사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 이라고 한다)이 필요한 경우 그 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장(이하 “직무관련사건 부서장” 이라 한다)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약약을 첨부하여 법무부서장에게 변호사 등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1조(지원범위) ① 직무관련사건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 확정 시(다만 상소심은 전부승소 후 상대방이 상소한 경우로 한정한다)까지
2.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검찰 기소 전(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까지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사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해당 공무원이 상소심에서 전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심에서 패소(일부 패소를 포함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을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55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해당 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전부 승소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후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회수할 비용 또는 국가로부터 보상받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제22조(직무관련사건의 수임료) ① 직무관련사건 민사소송의 변호사등에 대한 수임료는 제8조제1항의 별표에 따

른다.

② 직무관련사건 형사사건의 변호사 등에 대한 수임료는 사건의 경중 및 난이도, 도의 이해관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55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23조(비용회수) ①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의 경우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 판결(일부 패소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
2. 형사사건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기소유예를 포함 한다)가 확정된 경우

②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회수한 비용 또는 국가로부터 보상받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제5장 보 칙

제24조(사전협의 등) 주관부서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법무부서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문서(이하 “소송기록문서”라 한다)는 법무부서장이 기록·보관한다. 다만, 소송문서의 망실 방지를 위해 주관부서장도 자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2. 공탁에 관한 서류
3. 판결문
4.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5.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6. 그 밖에 참고서류

② 소송기록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관리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법무사무 처리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법무사무 처리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제8조, 제22조, 제23조 관련)

구분	지 급 기 준		승소사례금
	내 용	착 수 금	
민사 · 행정 소송	1. 신청사건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30을 착수금으로 지급하되, 본안사건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200만원 이내에서 사건의 경중 내지 난이도를 고려하여 착수금을 지급한다.	1. 신청사건의 경우 승소사례금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전부승소 경우, 착수금에 100% 곱한 금액을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한다. 3. 일부승소 경우, 60% 이상 승소한 경우에만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본안사건 ◦ 2,000만 원 미만 ◦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10억 원 이상	100만 원 이내 200만 원 이내 250만 원 이내 300만 원 이내 400만 원 이내 550만 원 이내	4. 화해 성립, 소 취하의 경우 당해 소송 착수금의 1/2을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하되, 소취하의 경우 1회 이상 변론이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3. 상고심 및 환송심 (소송 대리인이 동일한 경우)	본안사건의 1/2 (단, 신규 위임 시 본안사건 소가 기준으로 100%지급)	
기타 비용	1. 인지대 : 실액 2. 송달료 : 실액 3. 검증비 : 실액 4. 감정료 : 실액 5.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중 3급 공무원 해당액 6. 복사료 등 기타 비용 : 실액		

※ 1. 착수금, 승소사례금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10% 추가 지급.

2. 소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건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은 표의 지급기준과 사건의 경중을 참작하여 지급.

3.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은 심급별로 지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제9조 관련)

법원 및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본인은 위 소송사건에 있어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2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제9조 관련)

법원 및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위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아래의 사람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근무기관 : 강원특별자치도청

소 재 지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1) 근무부서 :
성 명 :
FAX

전화번호

(2) 근무부서 :
성 명 :
FAX

전화번호

(3) 근무부서 :
성 명 :
FAX

전화번호

년 월 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법원 귀중

■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3호서식]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제9조 관련)

사건번호 가 (차) (단독)

원고(채권자) :

피고(채무자) :

이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1. 소송대리허가신청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

주소 :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

첨부서류 :

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등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 정본의 수령, 등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년 월 일

위 신청인 및 위임인 성명 : 원고() (인)

○○○○법원

귀중

■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4호서식]

위 임 장(제9조 관련)

사 건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 간 사건에 관하여 에게 아래 권한을 수여하고 소송을 위임함.

- 수권사항-

- (1) 일체의 행정심판 및 소송행위
- (2) 변제의 수령 (3) 상소의 제기 (4) 반소의 제기
- (5)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화해 (6) 복대리의 선임
- (7) 공탁 대리 및 공탁물과 그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 (8) 담보취소신청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
- (9) 각 심급의 집행문 기타 제증명 등을 발급받는 행위
- (10)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행위
- (11) 기타 특별수권사항 [권한을 부여하면 ○ 표시, 보류하면 X표시]

기타 특별수권사항		수권여부
소의 취하	제기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 소송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	
상소의 취하	원심을 유지·확정하면서 상소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	
청구의 포기	위임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소송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	
청구의 인낙	상대방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소송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	
소송탈퇴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한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

주 소 :

수임인 :

○○○○ 법원 귀중

■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5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제20조 관련)

본인은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소속부서			
직위(직급)		성 명 (연락처)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종류 (민사, 형사)		사건금액 (소가)	
원고		피고	
<사건개요>			
<신청사유>			
<부서장 의견>			

첨부서류: 1. 소장 또는 입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사본 1부.
2. 확약서(별지 제6호서식)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직무관련사건 부서장:

(서명 또는 인)

■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6호 서식]

확 약 서(제20조 관련)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행정기관 등의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한 민사소송(또는 형사사건)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0조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제23조에 해당하는 소송비용 일체를 즉시 강원특별자치도에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확약인) 성명 ○ ○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관리 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법무사무처리 규칙」에서 소송사무와 직무관련사건의 처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2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 규칙 제904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더나은학력지원관”을 “미래학력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더나은학력지원관)”을 “(미래학력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더나은학력지원관”을 “미래학력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인성문화교육과 및 미래체육특수교육과”를 “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인성생활교육과 및 문화체육특수교육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국장·유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인성문화교육과장 및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을 “교육국장·유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인성생활교육과장 및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연구관”을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위원회 심의위원회 당연직 자격란의 “더나은학력지원관”을 “미래학력담당관”으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인성문화교육과장,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을 “인성생활교육과장,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 지정·운영 부서(제3조제5항 관련)

계열별	지정·운영 부서
과학 계열	미래학력담당관
외국어 계열	중등교육과
예술 계열	문화체육특수교육과
체육 계열	문화체육특수교육과
산업수요 맞춤형 계열	중등교육과

③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인성문화교육과장,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을 “인성생활교육과장,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④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특기자 배정 및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을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⑤ 강원특별자치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을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제7조제1항 관련)

분과 위원회	위원 인원	담당부서	주관부서	주요업무
학력분과	10명	미래학력담당관, 정책기획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행정과	유초등 교육과	○ 유아언어발달 및 유치원 교육과정 지원 ○ (기초)학력 지원 ○ 한글, 수학, 외국어 교육 ○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대입 진학
진로분과	10명	미래학교추진단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인성생활교육과, 문화체육특수교육과	중등 교육과	○ 진로·직업교육 ○ 과학·정보교육 ○ 영재교육 ○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 ○ 특수교육
인성분과	10명	정책기획과, 교육지원과 중등교육과, 인성생활교육과	인성생활 교육과	○ 인성교육 ○ 학교폭력예방·시민교육 ○ 체육교육 ○ 문화예술·독서·인문교육
복지분과	10명	정책기획과, 안전복지과, 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인성생활교육과, 예산과, 행정과	안전복지과	○ 유아교육 ○ 돌봄·방과후학교 ○ 교육복지 ○ 보건·영양교육 ○ 학생·학교안전 ○ 재난안전·산업안전보건관리
행정분과	10명	공보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인성생활교육과, 총무과, 예산과, 행정과, 시설과	시설과	○ 학부모 활동 지원 ○ 지역교육협력·교육자치활성화 ○ 교육정책 및 주요업무 ○ 감사업무 ○ 참여예산제 운영 ○ 교직원 연수 및 지원업무 ○ 교육환경개선사업 ○ 학교 및 기관 여건개선사업

[별표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분원의 명칭 및 위치
(제17조제1항 관련)

분 원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춘천분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등지길 5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동해분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해맞이길 183

[별표 4]

사무분장표(제42조 관련)

1. 본청

	사무분장
공보담당관	1. 강원교육 언론동향 분석 2. 언론 브리핑 운영 및 언론 인터뷰 취재활동 지원 3. 교육정책과 관련된 보도내용 분석 및 자료 관리 4. 오보·왜곡보도의 대응 5. 교육감 및 언론기관의 동정에 관한 사항 6. 강원교육 홍보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평가 7. 강원교육 홍보물(영상물, 간행물 등) 제작·보급 8.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홍보망 구성 및 운영 9. 강원교육소식 홈페이지 운영 10. 출입 기자 관리 및 브리핑실 운영 11. 교육 관련 보도기사 스크랩 관리 업무
감사관	1. 자체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종합감사 3. 특정감사 4. 감사원·교육부 감사 수감 및 결과처리 5. 국정감사 수감 및 결과처리 6. 청렴도민감사관제 운영 7. 학교자율종합감사 8. 적극행정 제도 운영 9. 부패방지 및 청렴 업무 10.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11. 비위·진정·청원 등 사안처리 12. 갑질근절 및 갑질신고센터 운영 13. 공무원범죄 통보사항 처리 14. 교무·학사 감사 기획 15. 일상감사 16. 재무감사 17.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결과처리 18. 민원 신고센터 운영(부패, 부조리, 공익) 19. 손·망실 및 훼손사고 조사·처리 20.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21.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22. 공직기강 확립 23. 공무원행동강령 제도 운영 24. 공공재정환수법 제도 운영 25.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운영 26.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무분장
	27.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28. 사안처리지원단 운영 29.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30. 본청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31. 본청 성고충심의위원회
미래학력담당관	1.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2. 강원학생향상도평가 3. 수능형 평가문항 개발 4. 이음교육 교과학습진단 문항 개발 보급 5. 이음교육 인적성진단도구 보급 6. 강원학생 학력 연구 분석 7. 평가문항개발 연구회 운영 8. CBT 기반 평가 모형 개발 9. 국가수준(국제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운영 10.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운영 11. 디지털 전환 교육혁신 종합 계획 수립 12. 디지털 전환 중장기 계획 수립 13. 디지털교과서 및 교육과정 운영 모형 개발 14.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모형 개발 15. 디지털 전환 T/F팀 운영 16. AI 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17. AI 기반 서술형 평가 시스템 구축 18. CBT 기반 평가 시스템 개발 19. 과학교육 일반 20. 과학기자재 관리 21. 발명실무원 운영 관리 22. 과학실험실 운영 23. 강원과학고·과학중점학교 운영 및 컨설팅 24. 민간참여학교 컴퓨터 운영 관련 25. 발명교육 26. 사이버학습서비스 운영 지원 27. 과학·영재·정보 연구학교 운영 지원 28. 영재교육기관 운영 및 개선 29. 교육정보프로그램 운영 30. 정보통신윤리 교육 등 정보화 교육 일반 31. 학교컴퓨터 및 교단선진화기기 운영 관리 32. 스마트교육 및 소프트웨어 교육 33.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 운영 지도 34. 학내망 구축 지원 35. 과학·정보 분야 현장지도 연구발표대회 운영 36.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무분장
	37. 공공저작물 관련 업무 총괄(수업지원 관련) 3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운영 총괄 39.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업무
미래학교추진단장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 복합화 시설 사업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BTL(민간투자) 사업 5. 그린스마트스쿨 교육과정
정책기획과장	1. 교육정책 전반 기획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 3.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4.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운영 5.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및 부교육감 회의 관리 6.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 회의 운영 7. 교육과장 및 행정과장 회의 운영 8. 부서 간 업무조정 9. 시도교육청 평가 10. 교육행정기관 평가 11. 학교평가 12.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13. 학교장·원장 워크숍 및 협의회 14. 교감·원감 워크숍 및 협의회 15. 남북교육 교류 추진 16.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17. 교육감 및 부교육감 지시사항 관리 18. 정부혁신 19. 국정과제 20. 교육정책 조사 21. 정책실명제 22. 교육정책사업정비 23.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24. 교육전문직원 워크숍 25. 자율학교 지정·고시 2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 운영 총괄 27. 교육개혁추진자문관 운영 28. 신년 인사말씀 및 시정연설문 기획·작성 29.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교육분야 추진 30. 함께학교 운영 총괄 31. 교육활동보호지원 사업 관리 32. 교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 33.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사무분장
	34. 질환교원관리 35. 교육회복 업무 총괄(심리정서 지원 포함) 36. 학교업무정상화(학교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 37. 더배움공동체 기획 운영 38. 교직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 원격 직무연수 기획 지원 39. 교무행정사 관리 40. 교육기부 활성화 41.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4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 43. 교육활동 중 형사고소 된 교원 법률지원 44.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 교육감 의견 제출 45. 교육활동 관련 민원 대응 시스템 운영 46.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47.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제도 개선 48. 강원특별법 지역별 협의체 운영 등 활성화 방안 시행 49. 특별자치도 교육자치·분권 추진 50. 지역사회와 협력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51. 시·군의회 및 교육시민단체와의 협력 52.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53. 교육발전특구 조성에 따른 대외협력 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55.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56. 개발도상국 교육(해외 교육정보화)지원 총괄 57. 대학협력(지역협력관, 교육혁신협의회) 58. 국제교류 업무(국제교류 MOU체결,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운영) 59. 교원단체 교섭협의 추진 및 지원 60.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61. 교육공무직 및 강사직종 노동조합 단체교섭
안전복지과장	1. 재난안전 업무 계획·운영·평가 총괄(각 부서별 소관 안전 업무 제외) 2. 국가재난(폭염, 황사, 오존 등 자연재해 포함)안전관리 종합계획수립 3. 재난안전 관계기관 협업 홍보 관리 4. 안전점검의 날 운영 5. 학생안전교육 및 교직원 안전연수 6. 학교안전사고예방 지역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7. 안전체험시설 활용 학생 안전교육 8.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 및 홍보 9. 학생안전교육 관련 유관기관 협업·홍보 관리 10. 학생 사망사안 업무 11. CCTV 설치 및 운영 업무 12. 학생보호인력 운영 13. 통학차량 안전요원관리(유·초·특 포함)

	사무분장
	14. 통학차량 안전관리 현황 조사 15. 교통분야 안전관리 16. 안전유관기관 협력 17.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18. 스쿨존 교통안전지도인력 운영 19. 학교안전공제회 관련 사항 20.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총괄 및 학비지원 21.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22. 저출산 고령사회 업무 지원 23.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24.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관련 업무 지원 25. 학생 교복비 지원 및 관련 업무 26. 교과서 주문공급 및 무상지원 27. 일반고 및 교육부 지정 기숙형 공립고 운영 지원 28. 학교 기숙사 통계자료 관리 29.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운영 30. 교육급여 업무 31. 강원교육장학회 운영 32. 외부 장학금 업무 지원 33. 꿈사다리 장학금 운영 34. 교육환경 정책방향 수립 및 추진 35.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36. 교육환경평가 37.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38. 환경위생 관리(공기질, 먹는 물, 소음 등) 39.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40. 안전보건교육 41.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42.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43.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44.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45.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46.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 47. 작업장 환기설비 점검 48. 중대재해 예방 계획 수립 및 추진 49.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점검계획 수립 및 추진 5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 수행 평가·관리 51. 안전보건 목표 및 운영방침 설정 및 관리 52. 비상대비업무 53. 을지태극연습계획 및 실시 54. 충무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

	사무분장
	55. 비밀 및 암호자재관리 56. 비밀취급인가자관리 57. 보안업무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분석·평가 58.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업무 59. 보안감사 60. 보안교육 61. 사회복무요원 관리 62. 직장민방위대운영
교육지원과장	1.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구 및 조직 관리 2.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3. 한시기구 설치 4. 행정권한 위임 및 이양 5. 행정업무선진화 6. 각종 위원회 관리 7. 제안제도 운영 8. 행정제도 개선 9. 구육성회직 운용 10. 학교지원센터 및 학교지원담당 총괄 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운영 12. 의회협력 일반 13. 학교급식 영양관리 및 식생활교육 14. 급식 컨설팅 운영 15. 친환경 급식 식재료 확대 16.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 및 계약 관리 17. 학교급식운영 평가 18. 급식위생·안전관리 19. 학교급식 경비 지원 20. 기타 급식비 지원 21. 급식시설 개선 및 현대화사업 추진 22. 학교우유급식 지원 관리 23. 직속기관 급식업무에 관한 사항 24. 학교급식 교육공무직 운영 25. 사립유치원 급식 운영 및 관리 26. 평생교육 계획 수립 27. 독서진흥 및 문화활동 지원 28. 강원교육사료관 운영 지원 29.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 30.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 접수 및 상담 31. 평생교육시설 지원 3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폐쇄 및 지도·감독 33.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지도 및 감독(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포함)

	사무분장
	3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취소 35.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36. 교육문화관(분관 포함) 운영 총괄 37.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운영 38.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 운영 39.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운영
유초등교육과장	1. 초등장학 2. 초등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3. 초등 학교생활기록부 4. 초등 학적관리 5. 초등 교수학습 평가 6. 초등 교수학습방법 지원 7. 계기교육 8. 학습준비물 경감 지원 9. 초등 창의적체험활동 10. 초등 교실수업개선활동 지원 11. 작은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12. 교육국장 협의회 운영 13. 경계선급학생 선별 및 지도 14. 초·중 이음교육 15. 초등 기초학력 및 학력 향상 16. 초등 기초학력 향상 중점학교 지정 및 운영 지원 17.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및 지원 18. 복식수업 보조강사 지원 사업 19. 한글문해 및 기초수학교육 증진 20. 협력교사제 운영 21. 기초학습지원단 운영 22. 초등학교현장지원단 운영 23. 기초학력지원(초등수학, 초등영어) 24. 맞춤형 교과보충 지원(초등) 25. 초등 학력 종합 계획 수립 및 지원 26.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27. 학력향상 교육지원청 지원 28. 유치원 장학자료 개발 및 보급 29. 신증설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놀이시설 포함) 30.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인력관리 포함) 31.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지원 32. 유아교육위원회 운영 33.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운영 34. 유치원 평가 3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 운영 총괄

	사무분장
	36. 초빙·공모제 운영(유·초) 37. 교육공무원 인사계획 수립(유·초) 38. 교육공무원 임용(유·초) 39. 교육공무원 전보(유·초) 40. 교육공무원 휴복직 관리(유·초) 41. 교육공무원 파견관리(유·초) 42. 보직교사 및 겸임교사 관리(유·초) 43. 장애인교원 현황 관리(유·초) 44. 담임배정 현황 관리(유·초) 45. 시간선택제 교원관리(유·초) 46. 교육공무원 호봉관리(유·초) 47. 교육공무원 국·공립 및 시도간 인사교류(유·초) 48. 교육공무원(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 명부 작성 관리(유·초) 49. 인사담당자 실무연수 운영(유·초) 50.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운영(유·초) 51. 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 운영(유·초) 52.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관리(유·초) 53. 보결전담강사 운영(유·초) 54.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발간 55.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관리(유·초) 56.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관리(유·초) 57. 스승 찾기 관련 업무(유·초) 58. 교육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의(유·초) 59. 교원능력개발평가(유·초) 60. 교육공무원 일반고충심사위원회 운영(유·초) 61. 교장중임 및 원로교사 심의 관리(유·초) 62.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 제외) 정원 수급관리(유·초) 63. 교육공무원 징계처리 및 소청심사 지원(유·초) 64. 교육공무원 퇴직관리(유·초) 65.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유·초) 66. 교육공무원 복무관리(유·초) 67. 교육공무원 상훈관리(유·초) 68. 교육실습 학교 운영(유·초) 69.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 수당 관리(초등) 70. 스승의 날 포상(유·초) 71.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유·초) 72. 초등 사립교원 정원관리 73.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칙·지침관리 74. 교(원)감 면접교사 운영(유·초) 75. 교육전문직원 선발(유·초) 76. 교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유·초)

	사무분장
	77. 수석교사 선발 및 재심사(유·초) 78. 계약제교원 관련 업무(유·초·중·특) 79. 신규교사책임지원제(유·초) 80. NEIS 연수 이수 결과 처리(유·초) 81. 교원 인사혁신 업무 82. 교육공무원 테마국외연수 운영(유·초·중·특) 83. 대학원 및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운영(유·초·중·특) 84. 교육공무원 복지(유·초·중·특) 85. 교육공무원 자격증 관리(유·초) 86. 유보통합 추진 방안 계획 수립 87.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88. 유보통합 서비스 격차 완화 추진 89.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현황(교육-보육, 방과후 운영) 분석 및 실사 90. 유보통합 정책 연구 추진 및 연수 기획 91. 유보통합 추진 지역교육청 컨설팅 기획 92.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용 방안 기획 및 분석 93. 유치원·어린이집 평가 및 지도점검 계획 수립 94.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및 특성화활동 분석 95. 지역특색 교육과정·보육과정 운영안 기획 96. 장애전담 어린이집 및 특수교육 대상 유아 현황 분석 97. 보육 교직원 인사 및 자격 관리 분석 98. 유보통합 관련 현장 의견 수렴 99. 유보통합 정책 홍보 계획 수립 100. 이관 준비 협의체(실무협의TF팀, 자문위원) 운영 101. 유보통합 조직 인수(육아종합지원센터, 도(시군)청사업 등) 102. 권역별 지방 단위 이관 준비 협의체(TF) 구축 및 운영 지원 103. 보육 업무 조직·인력 이관 및 관련 자치법규 개정 104. 도청 및 시군 보육 예산 이관 및 관련 자치법규 개정 105.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및 문서 이관 106.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계획 수립 107. 보육 대체교사 지원사업 분석 108. 보육 통계 관리
중등교육과장	1. 중등장학 2. 중등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3. 중등 학교생활기록부 4. 중등 교수학습 평가 5. 중등 교수학습방법 지원 6. 중등 창의적체험활동 7. 수석교사제 운영 8. 미이수 과목 이수 지원 9. 인정도서 개발 업무 총괄

	사무분장
	10. 자유학기제 운영 11.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12.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지원 13. 중등 교실수업개선활동 지원 14. 공교육정상화 업무 15. 고교학점제 16. 일반고 역량 강화 17. 역사교육과정 18.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 및 평가 지원 19. 수학교육 일반 20. 수학 교육과정 운영 지도 21. 수학 관련 행사 운영 22. 영어 및 제2외국어교육 일반 23. 영어회화 전문강사 업무 24.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운영 지도 25. 현장체험학습(중등) 26. 교외체험학습시스템 운영 관리(중등) 2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 운영 총괄 28. 학습지원튜터제 운영 29.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30. 중·고 이음교육 31. 중등 기초학력 및 학력 향상 32. 맞춤형 교과보충 지원 33. 학교현장지원단 운영(중등) 34. 사교육비 경감대책 35.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36. 전·편입학 관리 37. 중등 학적관리 38.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39. 중등 학력 향상 종합 계획 및 지원 40. 배움·성장 교과 보충 지원 41.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42. 전환기(중·고) 교육과정 지원 43. 거점형기숙형고교 운영 지원 44. 강원형농어촌자율학교 운영 지원 45.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운영 지도 46. 초중등 진로교육 운영 47.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8. 중등학교 진로전담교사제 운영 49. 고교입학전형 관리 50.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

	사무분장
	51. 대학진학 지원 52.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53. 진학전문지원관 운영 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 운영 총괄 55. 공동실습소 운영 56.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57.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지원 58. 미래농업선도고교 운영 지원 59. 취업기능 강화 사업 운영 60. 전문교과 교원역량 강화 61. 직업교육경진대회 운영 62. 직업교육 실습실 관리 및 기자재 지원 63. 직업교육 일반 64.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 65.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지원 66.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지도 67. 과정평가형 자격체제 운영 지원 68. 직업계고등학교 컨설팅장학 지원 69. 직업계고 재구조화 및 학과개편 70. 직업기초능력 평가 운영 71. 직업교육 학점제 운영 지원 72. 취업지원센터 운영 73. 초빙·공모제 운영(중등·특수) 74. 교육공무원 인사계획 수립(중등·특수) 75. 교육공무원 임용(중등·특수) 76. 교육공무원 전보(중등·특수) 77. 교육공무원 휴복직 관리(중등·특수) 78. 교육공무원 파견관리(중등·특수) 79. 보직교사 및 겸임교사 관리(중등·특수) 80. 장애인교원 현황 관리(중등·특수) 81. 담임배정 현황 관리(중등·특수) 82. 시간선택제 교원관리(중등·특수) 83. 교육공무원 호봉관리(중등·특수) 84. 교육공무원 국·공립 및 시도간 인사교류(중등·특수) 85. 중등 상치교과 해소 강사 지원 86. 교원 특별채용(중등·특수) 87. 교육공무원(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 명부 작성 관리(중등·특수) 88. 인사담당자 실무연수 운영(중등·특수) 89.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운영(중등·특수) 90. 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 운영(중등·특수) 91.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관리(중등·특수)

	사무분장
	92. 보결전담강사 운영(중등·특수) 9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발간 94.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관리(중등·특수) 95.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관리(중등·특수) 96. 스승 찾기 관련 업무(중등·특수) 97. 교육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의(중등·특수) 98. 교원능력개발평가(중등·특수) 99. 교육공무원 일반고충심사위원회 운영(중등·특수) 100. 교장중임 및 원로교사 심의 관리(중등·특수) 101.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 제외) 정원 수급관리(중등·특수) 102. 교육공무원 징계처리 및 소청심사 지원(중등·특수) 103. 교육공무원 퇴직관리(중등·특수) 104.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중등·특수) 105. 교육공무원 복무관리(중등·특수) 106. 교육공무원 상훈관리(중등·특수) 107. 교육실습 학교 운영(중등·특수) 108.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 수당 관리(중등) 109. 스승의 날 포상(중등·특수) 110.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중등·특수) 111. 사립교원 인사 및 정·현원관리(중등·특수) 112.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칙·지침관리 113. 교(원)감 면접교사 운영(중등·특수) 114. 교육전문직원 선발(중등·특수) 115. 교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중등·특수) 116. 수석교사 선발 및 재심사(중등·특수) 117. 신규교사책임지원제(중등·특수) 118. NEIS 연수 이수 결과 처리(중등·특수) 119. 교원 연수혁신 및 활성화 지원(유·초·중·특) 12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운영 총괄 121. 교육공무원 자격증 관리(중등·특수)
인성생활교육과장	1. 인권감수성교육 2. 인성교육 3. 청소년근로권리보호교육 4. 민주시민교육 5. 학생자치 6. 경제교육 7. 독도교육 8. 통일교육 9. 청소년단체 운영 관련 10. 학교환경교육 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 운영 총괄

	사무분장
	12. 행복더하기학교 운영 13. 다문화교육 및 탈북학생교육 총괄 1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 운영 총괄 15. 학교생활교육 지원 16.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 17. 학교선도위원회 지도 18.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지원 19.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 20.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 21. 학교폭력관련 실태조사 22. 학교폭력관련 유관기관 연계활동 23. 가정폭력 업무 24. 아동학대 업무 25. 학생 도박 예방교육 26. 보건교육기획 및 추진 27. 순회보건강사 및 건강실무사 관리 28. 학생 성교육 29.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30. 학교 보건 운영 31. 학생 건강검사 32. 학생건강증진학교 운영 33. 학교 보건시설 확충 및 현대화 사업 34. 순회보건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원 35. 학생 성폭력 사안 처리 지원 36.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37. 난치병 학생 관리 38. 흡연·음주 관련 학생 사안 처리 지원 39.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40. 학생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 41. 교직원 결핵검진 42. 학교양성평등교육 43. 성별영향평가 업무 44. 성범죄 경력자 점검 확인 업무 45. 학교 감염병 관리 46.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지원 및 점검 47. 학업중단예방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48.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49. 학업중단학생 학교 밖 지원센터 정보연계 50.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51. 청소년 전용공간 ‘친구랑’ 운영 지원 52.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

	사무분장
	53. 학생상담 및 심리상담 교육 54. 대안교육 운영 및 지도 55. 대안위탁교육기관 지정 56. Wee프로젝트 업무 57. 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및 학생지원 담당 총괄 58.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59. 학생 자살사안 처리 및 위기관리 지원 60.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결과관리 61. 가정형 Wee센터 운영(춘천·원주) 총괄 6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 운영 총괄 63. 청소년 인생학교 운영 총괄 64.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업무 65. 늘봄학교 운영 66. 방과후학교 운영 67.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68. 방과후 자유수강권 69. 초등돌봄교실 운영 70. 교육공무직(방과후학교지원가, 방과후학교전담사, 초등돌봄전담사) 관련 업무 71. 현장체험학습(초) 72. 교외체험학습시스템 운영 관리(초) 73. 지역교육공동체 운영 74. 더나은교육지구 운영 75. 사회적경제 교육 및 학교협동조합 운영 76. 지역교육과정 운영 지원 총괄
문화체육특수교육 과장	1. 체육교육일반 2. 체육단체지원 3. 학교운동부운영 4. 학교운동부 경기지도자 관리 5.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6. 스포츠강사 관리 7. 시도단위 체육대회 운영 8. 전국단위 종합체육대회 운영 9. 종목별 전국대회 운영 10. 강원체육중고등학교 운영 지도 11. 체육시설 수요파악 및 현황 관리(체육관 신축 포함) 12. 강원학생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13.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14. 학생 예술교육 15. 학교예술강사 지원 16. 강원학생예술축전 운영 17.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사무분장
	18. 강원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 지원 19. 어린이 놀이문화 활성화 20. 학교도서관 활성화 21.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22. 학교도서관지원센터 관리 운영 23. 학교도서관사서 및 학교도서관실무사 관리 24. 강원예술고등학교 운영 지도 25. 예술중점학교 운영 지도 26.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27.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28. 학부모 교육 및 상담 지원 29. 학부모회 활성화 지원 30. 학교장학(특수) 31.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32.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33. 특수교육 장학자료 개발 및 보급 34.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및 직업교육 운영 35.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36. 특수학교(급) 현장중심 장학 지원 37. 특수학교(급) 통합학급 교육활동지원 38. 현장체험학습(특수) 39. 교외체험학습시스템운영 관리(특수) 40.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41.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42. 특수교육관련서비스(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 가족상담) 지원 43.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 44.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및 선정 배치 45.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46.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47. 특수교육지원 교육공무직(치료사, 장애영아지도사) 연수 48.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병원학교, 원격수업) 49. 장애학생 인권보호 50.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51.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총무과장	1. 총무일반 2. 주·월간 업무보고 3. 당직운영 4. 공용차량 정수배정 및 본청 차량 운용 5. 본청 청사 및 관사 관리 6. 교육감 정무활동 지원 및 관리 7. 회의 및 행사 관리

	사무분장
	8. 행정국장 협의회 운영 9. 공직선거 관리 10.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 11. 교육감 보좌 및 일정 관리 12. 지역·시민사회단체 소통 13.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복무 관리 1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운영 총괄 15.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인사관리 16.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고충처리 17.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상훈관리 18.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성과상여금 19.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징계처리 20.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교육훈련 21.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국외연수 22. 공무원 건강보험 관리 23. 공무원 복지 지원 24. 공무원 연금 업무 25.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26. 정보화사업 기획·조정 27. 행정용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28. 공공데이터 개방·관리 29. 교육행정전자서명인증서 발급·관리 30. 교육통계 31. 본청 홈페이지 구축·운영 32. 나이스시스템 운영 지원 33. 에듀파인시스템 운영 지원 34.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지원 35. 전산담당공무원 연수 36. 전산거점 교육지원청 운영 지원 3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전산 운영 지원 38. 정보보안 39. 개인정보보호 40. 스쿨넷서비스 구축 총괄 41. 강원교육사이버안전센터 지원 42.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 43.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44. 정보공시 운영 45.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46.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시스템 관리자) 47. 전자문서 유통 관련 시스템 운영 48. 전자기록물 이관 관련 시스템 지원

	사무분장
	49. 전자이미지 공인 파일 관리 50. GWE메신저 운영 51. K-에듀파인 자료집계 시스템 운영 52.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실 운영 53. 행정정보공동이용 54. 공무원증 발급 55. 행정서비스현장관리 56. 정보공개제도 운영 57. 교육지원청 기록관 운영 지원 58. 기록관리제도 및 기록관 운영 59. 단위과제 및 기록관 기준표 운영 60. 본청 속기 지원 61. 공인관리 62. 문서실 운영 63. 청원제도 운영 64. 공공저작물 관련 업무(수업지원 외)
예산과장	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관리 2. 지방교육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관리 3. 국고보조금 관리 4. 지방보조금 관리 5. 성인지 및 성과예산제도 운영 6. 지방교육재정분석 및 재정효율화 추진 7.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채원 관리 8.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및 관리 9. 지방교육재정공시 운영 및 관리 10.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관리 1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 학교회계 예·결산 지원 및 관리 13. 주요 재정사업평가 14. 학교회계제도 운영 15. 비법정전입금 관리 16. 참여예산제 운영(주민참여예산 및 학교참여예산) 17. 교육투자 실태조사 18. 기금 총괄 관리 19.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유치원운영위원회 포함) 20. 학교발전기금 관리 21. 학교법인 관리 22. 사립학교 행·재정 지원 23.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관리 24. 사립학교 예·결산 관리 25. 유아학비 지원

	사무분장
	26. 유치원 원비 안정화 업무 27.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업무 28. 사립유치원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29.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및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운영 30.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운영 31. 사립유치원 인가에 관한 사항 32. 교육공무직 종합관리 계획 수립 33. 교육공무직 인력진단 및 분석 34.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직종 정원 관리 35. 비정규직채용 사전심사제 36. 교육공무직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및 제도개선 37. 교육공무직 정원 및 인사관리 38. 교육공무직 상훈·복무·징계관리 39.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운영 40. 교육공무직 장애인고용확대 및 고용부담금 관리 41.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관리 42.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43. 교육공무직 인건비 예산편성 및 재배정(무기계약직종) 44.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무기계약직종) 45.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및 실태 점검 46.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47. 교육공무직 임금 교섭
행정과장	1. 각급학교 설립·폐지 및 이전 2. 학교용지 확보 3. 학급 배정 및 편성 4. 학생배치계획 5. 초중학교 의무취학 6. 중학교 입학배정 관리 7.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관리 8. 특수지 관리 9. 통합운영학교 관리 10. 학생 통학여건 개선(유·특 포함) 11. 통학차량 지원(유·특 포함) 12. 특수교육대상자 통학편의 지원 13. 통학차량 안전장치 구축 14. 교육지원청 이전·설립에 관한 사항 15. 대안학교 설립·폐지 및 이전 16.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및 이전 17. 공립유치원 설립·폐지 및 이전 18. 사립 학교 설립·폐지 19. 유아배치계획

	사무분장
	20. 유치원 학급 편성 21. 교육비특별회계 자금 관리 22. 계약업무 23. 교육금고 관리 24. 급여 관리(연말정산 포함) 25. 부정당업자 제재 관리 26. 세무관리 27.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28. 재무회계 결산 29. 채권압류금 관리 30. 회계운영지침 관리 31. 회계직공무원재정보증 업무 32. 에너지 절약 업무 33. 교육비특별회계 출납 및 결산 34. 강원교육사랑카드 운영 관리 35. 발주계획 설명회 36. 국·공유 재산의 관리 및 처분 37. 관사 관리·운영 38. 물품의 관리 및 처분 39.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의 책정 및 면제 40. 지방채 차입 및 상환 41. 채권 관리 42.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 43.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44. 교육행정심판위원회 운영 45. 소송업무(민사소송, 행정소송) 46. 법률자문 및 상담 47. 고문변호사 운영 48. 법무행정 일반 49. 법제 심의 및 관리
시설과장	1. 시설사업계획 수립 2. 교육환경개선 사업 3. 사립학교 시설사업 보조금 지원·관리 4.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 체육관 개·보수 6. 다목적실 신축 및 개·보수 7.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업무 8. 기술직 및 시설관리직연찬회 운영 9. 신설·이전사업 시설사업비 검토 10. 주요시설사업 추진상황 관리 11. 석면안전관리

	사무분장
	12. 유아·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13. 교육시설 환경 분야 업무 14. 내진보강종합계획 수립·시행 15. 교육시설 안전점검 계획수립·시행·분석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6. 안전사고위험시설 관리 17. 노후시설 정밀점검 18. 국가안전진단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19. 창호안전시설 업무 20.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운영 21. 샌드위치 건물해소 사업 22. 특수구조 건축물 안전점검 관리 23. 2중·3중 시설물 지정·관리 및 FMS시스템 관리·운영 24.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운영 25. 교육지원청 증축·개축에 관한 사항 26.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 27. 도시계획관련업무 28. 교육시설 자문위원단 구성·운영 29. 개축심의위원회 운영 30.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협의 31. 학교시설 건축승인 32. 학교시설 기준에 관한 업무 33. 친환경에너지시설 관련 업무 34. 교육시설심의위원회 운영 35. 학교시설 통합정보 시스템(에듀빌) 업무 추진 36. 학교햇빛발전소 민간투자사업 유지관리 37. 교육시설 사업관리 종합평가 및 합동점검 38. 시설사업 만족도 관련 업무 39. 교육시설 자체감리 관련 업무 40. 교육시설사업 단가에 관한 업무 41. 실시설계 TF팀 운영관리 42. 신·증설학교 설계 협의 43. 주요자재 및 관급자재 방안 44.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업무 45. 기계설비법 관련 업무 46. 교육시설 품질향상에 관한 업무 47. 직속기관 시설사업 집행 및 하자 관리 48. 하자조사·분석관련 업무 49. 본청 및 직속기관 건축협의 50.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운영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

구분	사무분장
교육연구부장	1. 기본운영계획 및 평가·분석 2. 교육과정 지침 개발 및 운영 지원 3. 교육과정 운영 자료 및 교재 개발 4. 인정도서 개발 및 심의 지원 5. 인정도서 수정·보완 및 심의 6. 연구학교 운영 7.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운영 8. 강원교육 정책과제 개발 및 연구 9. 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수행 10. 현장교원 연구 지원 11. 정책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12. 국내외 교육정책 분석 및 제안 13. 연구보고서 및 연구학술지 발간 14. 민주적 학교문화 연구 지원 15. 공동연수과정 운영 16. 강원교육백서 발간 17. 강원교육연구회 지원 18. 교원 책 출판 지원 19. 학생성장 및 정책평가 연구
총무부장	1. 보안 및 공인 관리 2. 인사 및 복무 3. 예산, 결산 및 회계 4.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기록물 및 문서 관리 7.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0.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1. 교육공무직 채용 및 보수 12.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구분	사무분장
교원연수부장	1. 연수의 기획 및 조정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연수계획 수립 3. 교수요원 확보 및 외래강사 초빙 4. 평가 및 연수결과 심사분석 5. 분임토의 지도 및 평가 6. 연수활동계획 및 연수 안내 7. 연수생의 근태파악 및 상벌 8. 직무연수 대상자 지명 9. 특수분야 연수기관의 심사 및 지정 10. 연수생의 등록·편제 11. 연수생의 학적 관리 12. 연수 진행 및 홍보 13. 각종 연수교재의 개발·제작 및 관리 14. 도서관 및 정보화교육실 운영 관리 15. 원격연수 16. 연수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 17. 교육과정 편성 및 외래강사 초빙 18. 연수기자재 관리
행정연수부장	1.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및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연수(이하 "행정연수"라 한다)의 기획 및 조정 2. 행정연수 교육과정 편성 및 연수계획 수립 3. 행정연수 교수요원 확보 및 외래강사 초빙 4. 행정연수 대상자 선발 5. 행정연수 운영 및 연수생 근태·생활지도 6. 행정연수 평가업무 및 연수결과 분석 7. 행정연수 이수실적 기록 및 관리 8. 행정연수 생활관 운영 및 관리 9. 행정연수 급식운영 및 급식소 관리 10. 행정연수 기자재 및 분임물품관리 11. 행정연수부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2. 행정연수부 내외의 교육환경 조성
총무부장	1. 보안 및 공인 관리 2. 인사 및 복무 3. 예산, 결산 및 회계 4.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기록물 및 문서 관리 7.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구분	사무분장
	10.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1. 교육공무직 채용 및 보수 12. 급식운영 및 급식소 관리 1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분원장	1. 연수의 기획 및 조정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연수계획 수립 3. 교수요원 확보 및 외래강사 초빙 4. 평가 및 연수결과 심사분석 5. 연수활동계획 및 연수 안내 6. 연수생의 근태 파악 7. 연수 대상자 지명 8. 연수생의 등록·편제 9. 연수생의 학적 관리 10. 연수 진행 및 홍보 11. 각종 연수교재의 개발·제작 및 관리 12. 연수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 13. 연수기자재 관리 14. 그 밖에 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구분	사무분장
과학정보부장	1.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교육전문직원 인사·복무 3. 과학·수학·정보교육의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4. 과학·수학·정보교육 행사 운영 및 지원 5. 과학·수학·정보·실과(기술·가정)·발명·환경·영재교육의 연수 지명 및 운영 6. 공동연수과정 운영 7. 과학·수학·정보·영재·환경 연구학교 운영 지도 8.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운영 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부설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10. 과학·수학·정보·기술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11. 과학·수학·정보교육 연수용 콘텐츠 개발·지원 12. 과학·수학·정보교육 관련 연구·경진대회 13. 교원의 과학·수학·정보교육 관련 동아리 및 연수·연찬활동 지원 14. 과학·수학·정보교육 저변 확대 및 홍보 15. 과학·수학·정보교육 관련 출판·인쇄 1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부설 정보영재교육원 운영 17.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18.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19. 사이버학습 운영 20. 디지털 교육자료 관리 21.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 22. 과학전람회 및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23. 과학실험실 운영 24. 교육자료전 운영 25. 발명교육 운영 26. 학교도서관 담당자 DLS 활용 연수 27. 통합전자도서관 관리 및 운영 28.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지원 29.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 운영 30. 원격교육 지원(공공 LMS, 콘텐츠 관리 등) 31. 그 밖에 과학·수학·정보교육에 관련 사항
총무부장	정보지원과 장 1. 학교(기관) 통합 누리집 구축·운영 2. K-에듀파인시스템 구축·관리 3. 기록관리시스템 구축·관리 4. 교육포털시스템 인프라 지원 5. 통합전자도서관 인프라 지원 6. 나이스 시스템 구축·관리 7. 강원나이스 상담센터 운영 8. 나이스 현장자문단 구성·운영 9. 나이스 교무업무 사용자 교육 운영

구분		사무분장
		10. 지방공무원 정보화 연수 11.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시행 12.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관리 13. 정보보안 관리·운영 14. 개인정보보호 관리·운영 15. 강원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 16. 스쿨넷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17. 클라우드플랫폼 구축·관리 18. 교육정보 기반시설 운영 19. 교육정보시스템 백업·복구 20.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
	총무과장	1. 보안 및 공인 관리 2. 인사 및 복무 3. 예산, 결산 및 회계 4.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기록물 및 문서 관리 7.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0.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1. 급식운영 및 급식소 관리 12. 교육공무직 채용 및 보수 1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분원장		1. 과학·수학·정보 전시 및 체험교육운영 2. 과학·수학·정보 관련 수업 및 교육자료 3. 과학·수학·정보 관련 행사 4. 그 밖에 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

구분	사무분장
교육과장	1. 교육과정 기획 및 조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3. 진로교육 관련 연구 및 자료 개발·보급 4. 진로교육 관련 연구학교 운영 및 지도 5. 진로교육 관련 학습연구년제 특별 연수 운영 6.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교직원·학부모 진로교육 연수 개설·운영 8. 공동연수과정 운영 9. 진로체험실 운영 및 관리 10. 생활관 운영 및 생활지도 11. 전국나무장난감 축제 운영 12. 진로도서관 운영 및 관리 13. 진로교육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14. 학교 진로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15. 진로교육센터 운영 16. 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 관리 17. 기타 진로교육관련 업무
총무과장	1. 보안 및 공인 관리 2. 인사 및 복무 3. 예산, 결산 및 회계 4.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기록물 및 문서 관리 7.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0.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1. 교육공무직 채용 및 보수 12. 보건실 및 전산실 운영 13. 급식운영 및 급식소 관리 14.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

구분	사무분장
국제교육과장	1.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교육전문직원 인사·복무 3. 교육과정 기획·운영·평가 4. 외국어, 국제교육 등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공동연수과정 운영 6. 연수(교육)생 선정·관리·평가·수료 등에 관한 사항 7. 교수(원어민 보조교사, 강사 등)요원 채용 및 지원 8. 국내외 연수기관 선정·교류 등에 관한 사항 9. 연수(교육) 교재,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10.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의 글로벌 역량 개발 지원 11. TaLK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12. 국제교류협력사업 운영 13. 글로벌마인드함양사업 운영 14. 세계시민교육 15. 다문화교육 및 탈북학생교육(정책, 통계관리, 네트워크) 16. 외국어교육 운영 지원 17. 개발도상국 교육(해외 교육정보화)지원 사업 18. 그 밖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총무과장	1. 보안 및 공인 관리 2. 인사 및 복무 3. 예산, 결산 및 회계 4.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기록물 및 문서관리 7.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0.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1. 교육공무직 채용 및 보수 12. 급식운영 및 급식소 관리 1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

구분	사무분장
교육과장	1.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유아교육 연구 및 운영·지원 3. 유아교육 프로그램, 교재 개발 및 보급 4.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공동연수과정 운영 5. 유아교육 정보제공 6. 유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7. 유아교육 연혁관리 8. 그 밖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총무과장	1. 보안 및 공인 관리 2. 인사 및 복무 3. 예산, 결산 및 회계 4.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기록물 및 문서관리 7.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0.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1. 교육공무직 채용 및 보수 12.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

구분	사무분장
교육과장	1.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교육과정 기획·운영·평가 3.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상담치유 교육과정 운영 5. 교육(연수)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6. 교육생의 교육평가 및 추수지도 7. 사임당의 유업에 관한 자료조사 연구 및 자체 연수 8. 그 밖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총무과장	1. 보안 및 공인 관리 2. 인사 및 복무 3. 예산, 결산 및 회계 4.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기록물 및 문서관리 7.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0.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1. 교육공무직 채용 및 보수 12.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

구분	사무분장
교학과장	1.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교육과정 기획·운영·평가 3.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Wee스쿨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운영 5.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6. 교육(연수)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7. 교육생의 교육평가 및 추수지도 8. 청소년 인생학교 운영 9. 그 밖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총무과장	1. 보안 및 공인 관리 2. 인사 및 복무 3. 예산, 결산 및 회계 4.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기록물 및 문서관리 7.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0.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1. 교육공무직 채용 및 보수 12.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

구분	사무분장
원장	1. 학생 통일교육 기획 및 운영 2. 교직원 대상 통일연수 기획 및 운영 3. 통일교육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 평가 4. 통일교육 자료 제작 및 보급 5. 그 밖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구분	사무분장
원장	1.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2. 각종 여가선용 및 심신수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회의장소 제공 4. 교직원의 자생 동아리 수련활동 지원 5. 분원의 운영 및 관리 6. 그 밖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분원장	1.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2. 각종 여가선용 및 심신수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회의장소 제공 4. 교직원의 자생 동아리 수련활동 지원 5. 그 밖에 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12. 교육문화관

구분	사무분장
문헌정보과장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公衆)에 이용 제공 2. 독서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 3. 자료실 운영 및 정보서비스 제공 4. 학생·학부모 대상 문화활동프로그램 개발·운영 5. 독서 및 문화활동 동아리 운영·지원 6. 자료의 조사·연구·통계 및 제적 7. 각종 독서교육 활동 지원 8. 자료의 상호대차 9.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 10. 교육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총무과장	1. 보안 및 공인 관리 2. 인사 및 복무 3. 예산, 결산 및 회계 4.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기록물 및 문서 관리 7.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0.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1. 교육공무직 채용 및 보수 12.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분관장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公衆)에 이용 제공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3. 학생·학부모 대상 문화활동프로그램 개발·운영 4.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자료 교류 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및 통계 6. 그 밖에 도서관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13. 춘천·원주·강릉교육지원청

구분	사무분장
교육과장	1. 주요업무계획 수립 2. 학교장학 3. 유관기관 교육협력 및 대학협력 업무 4. 교육정책 개발 및 기획 5. 검정고시 관리 6. 국제교류 협력 업무 7. 장학금 지원 관리 8. 교육기부 9. 학생안전교육 업무 10. 학교업무정상화 11. 교육공무원 이전비 지급 12. 컨설팅 활동 13. 기관평가(학교, 교육지원청) 14. 교육회복 지원 15. 교원단체 업무 16. 교수학습 자료 관리 17. 교실수업 개선 지원 18. 연구 및 중점학교 운영 19.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20. 학적관리(교육감이 선발·배정하는 일반고등학교 포함) 21. 계약제교원 관련 업무 22.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23. 교원 전문성 신장 24.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 25. 협력교사제 운영 26. 학력증진 및 학력평가 27. 방과후학교 운영(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지원 포함) 28. 사교육비 경감 대책 수립 29. 돌봄교실 운영 30.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31. 유치원 복지 지원 32.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33. 작은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34. 교원의 비위·진정 및 청원사항 조사 처리 35. 학습클리닉센터 운영 36. 현장체험학습 37. 신규교사 책임지원제 38. 고교입학전형 관리 39. 대입수능 관련 업무 40. 전·편입학 업무

구분	사무분장
	41. 진로진학 지도 42. 외국어교육 43. 직업교육 운영 44. 고교학점제 업무 45.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46. 학부모지원 일반 47. 지역교육공동체 업무 48. 문화예술교육 49. 통일교육 50. 생태환경교육 51. 다문화교육 52. 시민교육 53. 독서인문교육 54. 인권인성 55.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센터 포함) 56. 민주적 학교문화 운영 지원 업무 57. 행복더하기학교 운영 지원 58. 남북교육 교류 추진 59. 더나은교육지구 운영 60. 특수교육서비스 61. 특수교육운영 지원 62. 체육교육 63. 정보화교육 64. 과학교육 65. 영재교육 66. 학교급식 업무 67.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68.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관리 지원
행정과장	1. 공인관리 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인사 및 교육훈련 3.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상훈 및 징계 4.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평가 관리 5. 6급 이하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단위기관 내 정원관리 6.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및 결과 처리 7.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유·초·중학교에 대한 종합·재무·복무감사에 관한 사항 8.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등의 비위·진정 및 청원사항의 조사 처리 9. 성과관리 10. 교육통계 관리 11.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12. 정보공개 및 공시 13.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구분	사무분장
	14. 공무원단체 관리 15. 대외기관 협력 16. 기관장협의회 운영 17. 민원관리 18. 보안관리 및 비상대비 19. 재난안전 관리 20. 홍보업무 21. 행정제도 개선 및 행정업무 경감 22. 청렴업무 23. 각종위원회 운영 및 관리 24. 총무일반 25. 청사관리 26. 학교운영위원회 관리 27. 학생배치 28. 중학교 입학 배정 관리 29. 사학법인 관리 30. 사학재정 지원 31. 비영리법인 및 단체 관리 32. 학원·교습소·개인과의 운영 관리 33. 평생교육시설 등록, 신고, 지도 및 감독 34. 저출산 고령사회 업무 35.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36.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지원 37. 유아학비 지원 38.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39.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및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운영 40.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관리 41.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42. 세입의 출납 및 결산 43. 물품관리 44. 관급자재 구매 및 관리 45. 세무관리 46.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47.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48. 재산관리 49. 채권채무 관리 50. 교육시설재난공제관련 업무 51. 교육공무직 임용 및 보수 일반 업무 52. 정보보호 53.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4. 정보화기반 운영

구분	사무분장
	55. 행정정보화 업무 지원 56. 통학편의지원 57. 학교 전체 네트워크망 관리 및 컨설팅
시설과장	1. 시설사업계획 수립·조정 2. 교육시설 사용자 만족도 관리 3. 교육시설 실태 점검 4. 시설환경 평가관리 5. 각급학교 시설공사 관리 6.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및 관리 7. 우수교육시설 선정 8. 공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협의 9. 교육행정기관 시설개선 지원 10.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11. 학교시설복합화 관리 12.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기술지원(공사내역서 작성 및 공사감독 지원) 13. 학교시설현황 관리 14. 민간투자사업 관리 15. 관급자재 관리 16. 내진관련 업무 17. 사용자참여제도 관리 18. 시설공사 일위대가 산정 19. 교육시설 안전점검 20. 하자검사 등 사후 관리
학생지원센터장	1. 생활교육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3. 학교(성)폭력 및 사안 4.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지원 5. 권역별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단 운영 6. 학교선도위원회 지원 7. 자살예방(생명존중) 교육 8. 흡연·음주·약물오남용·성매매·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9. 성교육·성평등 교육 지원 10. 학교보건 업무(보건순회교육 포함) 11. 학교 감염병 관리 12.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지원 13. 정신건강(정서행동특성)업무 지원 14. 학생자살 위기관리 및 사안처리 15. 위기학생 지원(Wee센터 운영) 16. 학업중단학생 지원 17. 대안교육 18.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

구분	사무분장
	19. 상담 및 치유헌동 20. 기타 학생지원에 필요한 업무 21. 가정형Wee센터 운영(춘천, 원주) 22. 학교밖 청소년 지원 23.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학교지원센터장	1. 학교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2. 강사인력풀 관리 3. 학교장임용 학교인력(기간제교원, 대체인력 등) 채용 지원 업무 4. 에듀버스(유·초·중) 운영 및 통학편의 지원 업무 5. 저소득층 지원 6. 교육비(복지) 지원 7. 교과서 업무 지원 8. 학교 환경 안전 및 위생(미세먼지·라돈·석면·공기질·물관리 등) 업무 9.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및 관리 10.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11. 산업안전·보건 업무 12. 관내 공립학교 법정관리용역 통합 계약(전기, 소방, 오수) 13. 소규모학교(시설관리직 미배치교) 지원 14. 기타 학교 지원에 필요한 업무

14. 그 밖의 교육지원청

구분	사무분장
교육과장	1. 주요업무계획 수립 2. 학교장학 3. 유관기관 교육협력 및 대학협력 업무 4. 교육정책 개발 및 기획 5. 검정고시 관리 6. 국제교류 협력 업무 7. 장학금 지원 관리 8. 교육기부 9. 학생안전교육 업무 10. 학교업무정상화 11. 교육공무원 이전비 지급 12. 컨설팅 활동 13. 기관평가(학교, 교육지원청) 14. 교육회복 지원 15. 교원단체 업무 16. 교수학습 자료 관리 17. 교실수업 개선 지원 18. 연구 및 중점학교 운영 19.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20. 학적관리(교육감이 선발·배정하는 일반고등학교 포함) 21. 계약제교원 관련 업무 22.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23. 교원 전문성 신장 24.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 25. 협력교사제 운영 26. 학력증진 및 학력평가 27. 방과후학교 운영(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지원 포함) 28. 사교육비 경감 대책 수립 29. 돌봄교실 운영 30.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31. 유치원 복지 지원 32.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33. 작은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34. 교원의 비위·진정 및 청원사항 조사 처리 35. 학습클리닉센터 운영 36. 현장체험학습 37. 신규교사 책임지원제 38. 고교입학전형 관리 39. 대입수능 관련 업무 40. 전·편입학 업무

구분	사무분장
	41. 진로진학 지도 42. 외국어교육 43. 직업교육 운영 44. 고교학점제 업무 45.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46. 학부모지원 일반 47. 지역교육공동체 업무 48. 문화예술교육 49. 통일교육 50. 생태환경교육 51. 다문화교육 52. 시민교육 53. 독서인문교육 54. 인권인성 55.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센터 포함) 56. 민주적 학교문화 운영 지원 업무 57. 행복더하기학교 운영 지원 58. 남북교육 교류 추진 59. 더나은교육지구 운영 60. 특수교육서비스 61. 특수교육운영 지원 62. 체육교육 63. 정보화교육 64. 과학교육 65. 영재교육 66. 학교급식 업무 67. 생활교육 68.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69. 학교(성)폭력 및 사안 70.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지원 71. 학교선도위원회 지원 72. 자살예방(생명존중) 교육 73. 흡연·음주·약물오남용·성매매·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74. 성교육·성평등교육 지원 75. 학교보건 업무(보건순회교육 포함) 76. 학교 감염병 관리 77.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지원 78. 정신건강(정서행동특성)업무 지원 79. 학생자살 위기관리 및 사안처리 80. 위기학생 지원(Wee센터 운영) 81. 학업중단학생 지원

구분	사무분장
	82. 대안교육 83.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 84. 상담 및 치유험동 85. 기타 학생지원에 필요한 업무 86.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87.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관리 지원 88. 학교밖 청소년 지원 89.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행정과장	1. 공인관리 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인사 및 교육훈련 3.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상훈 및 징계 4.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평가 관리 5. 6급 이하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단위기관 내 정원관리 6.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및 결과 처리 7.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유·초·중학교에 대한 종합·재무·복무감사에 관한 사항 8.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등의 비위·진정 및 청원사항의 조사 처리 9. 성과관리 10. 교육통계 관리 11.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12. 정보공개 및 공시 13.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14. 공무원단체 관리 15. 대외기관 협력 16. 기관장협의회 운영 17. 민원관리 18. 보안관리 및 비상대비 19. 재난안전 관리 20. 홍보업무 21. 행정제도 개선 및 행정업무 경감 22. 청렴업무 23. 각종위원회 운영 및 관리 24. 총무일반 25. 청사관리 26. 학교운영위원회 관리 27. 학생배치 28. 중학교 입학 배정 관리 29. 사학법인 관리 30. 사학재정 지원 31. 비영리법인 및 단체 관리 32.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운영 관리 33. 평생교육시설 등록, 신고, 지도 및 감독

구분	사무분장
	34. 저출산 고령사회 업무 35.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36.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지원 37. 유아학비 지원 38.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39.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및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운영 40.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관리 41.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42. 세입의 출납 및 결산 43. 물품관리 44. 관급자재 구매 및 관리 45. 세무관리 46.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47.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48. 재산관리 49. 채권채무 관리 50. 교육시설재난공제관련 업무 51. 교육공무직 임용 및 보수 일반 업무 52. 정보보호 53.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4. 정보화기반 운영 55. 행정정보화 업무 지원 56. 학교 전체 네트워크망 관리 및 컨설팅 57. 시설사업계획 수립·조정 58. 교육시설 사용자 만족도 관리 59. 교육시설 실태 점검 60. 시설환경 평가관리 61. 각급학교 시설공사 관리 62.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및 관리 63. 우수교육시설 선정 64. 공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협의 65. 교육행정기관 시설개선 지원 66.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67. 학교시설복합화 관리 68.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기술지원(공사내역서 작성 및 공사감독 지원) 69. 학교시설현황 관리 70. 민간투자사업 관리 71. 관급자재 관리 72. 내진관련 업무 73. 사용자참여제도 관리 74. 시설공사 일위대가 산정

구분	사무분장
	75. 교육시설 안전점검 76. 하자검사 등 사후 관리 77. 학교지원 운영계획 수립 78. 학교지원 홈페이지 관리 79. 강사인력풀 관리 80. 학교장임용 학교인력(기간제교원, 대체인력 등) 채용 지원 업무 81. 에듀버스(유·초·중) 운영 및 통학편의 지원 업무 82. 저소득층 지원 83. 교육비(복지) 지원 84. 교과서 업무 지원 85. 학교 환경 안전 및 위생(미세먼지·라돈·석면·공기질·물관리 등) 업무 86.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및 관리 87.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88. 산업안전·보건 업무 89. 관내 공립학교 법정관리용역 통합 계약(전기, 소방, 오수) 90. 소규모학교(시설관리직 미배치교) 지원 91. 기타 학교 지원에 필요한 업무
양양교육지원센터장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2. 학교장학 3. 연구 및 중점학교 운영 4. 교수학습자료 관리 5. 교실수업 개선 지원 6. 교원 전문성 신장 7. 컨설팅 활동 8. 학력증진 및 학력평가 9. 학적관리 10. 협력교사제 운영 11. 영재교육 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13. 진로진학 지도 14. 고교입학전형 관리 15. 유관기관 교육협력 16. 학교업무정상화 17.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18. 학부모지원 일반 19. 작은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20. 지역교육공동체 업무 21. 민주적 학교문화 운영 지원 업무 22. 행복더하기학교 운영 지원 23. 더나은교육지구 운영 24. 학습클리닉센터 운영

구분	사무분장
	25. 상담 및 치유험동 26.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 27. 민원업무 28.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29. 학교밖 청소년 지원 30.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31. 기타 학생지원에 필요한 업무

15. 이승복기념관

구분	사무분장
관장	1. 기념관 관리 2. 자료 발굴 및 보존 3. 자료 전시 및 홍보 4. 이승복장학회 운영 5.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16. 강원학생스포츠센터

구분	사무분장
센터장	1.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2.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3. 학생선수 훈련 및 학습지원 4. 체육지도 관련 연수 운영 5. 동계스포츠 체험프로그램 운영 6. 학생선수 훈련에 필요한 숙박시설과 훈련보조시설 제공 7. 그 밖에 강원학생스포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개정이유 ◇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교육·돌봄 정책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분장사무 조정과 부서명 개편 등
본청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본청 담당관 및 부서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 조정
(제3조, 제6조, 제8조, 별표 4)
 - 더나은학력지원관 → 미래학력담당관
 - 인성문화교육과 → 인성생활교육과
 - 미래체육특수교육과 → 문화체육특수교육과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원장 직위의 개방형직위 지정(제18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2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 규칙 제905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종, 직급, 직렬별		총 계	도 의 회 사 무 처	본 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 관	합 계	4,155	7	801	1,134	2,213
	정 무 직	1		1		
	일 반 직	3,743	7	627	896	2,213
	연 구 직	18		2	16	
	특 정 직	388		166	222	
	별 정 직	5		5		
정무직	정 무 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일반직계	3,743	7	627	896	2,213
	3급	소 계	5	5		
		지방부이사관	5	5		
	4급	소 계	18	1	17	
		지방서기관	1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17	1	16	
	5급	소 계	129	1	50	53
		교육행정	93	1	34	51
		교육행정·행정	0	0		
		행정	2	2		
		교육행정·공업·시설	5	2	1	2
		교육행정·행정·공업·시설	14		14	
		교육행정·식품위생	2	2		
		사서	7	7		
		공업·시설	6	3	3	
	6급	소 계	941	1	150	615
		교육행정	613	1	72	460
		교육행정·식품위생	2	2		
		전산	16	7	9	
		사서	32	32		
		공업	14	4	10	
		공업·시설	14	2	12	
		식품위생	19	2	17	
		간호	1	1		

기관별 직종, 직급, 직렬별			총 계	도 의 회 사 무 처	본 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시설	25		11	14	
		운전	65		2	25	38
		위생·조리	4		1		3
		시설관리	116		5	7	104
		기계운영	7		4		3
		사무운영	13		5	1	7
	7급	소 계	1,349	3	227	346	773
		교육행정	848	1	132	202	513
		전산	34		19	15	
		사서	40		37	3	
		속기	2	2			
		공업	20		3	17	
		공업·시설	17			17	
		식품위생	23		2	21	
		의료기술	1				1
		간호	2		2		
		시설	41		9	32	
		운전	102		4	17	81
		위생·조리	4				4
		시설관리	169		9	21	139
		기계운영	15		4		11
		사무운영	30		6	1	23
		전기운영	1				1
	8급	소 계	1,297	1	174	350	772
		교육행정	787		102	229	456
		전산	11		8	3	
		사서	34		34		
		속기	1		1		
		공업	20		1	19	
		식품위생	10		1	9	
		간호	4		3	1	
		시설	30		1	29	
		운전	168			19	149
		시설관리	196		12	39	145

기관별 직종, 직급, 직렬별			총 계	도 의 회 사 무 처	본 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기계운영	4				4
		사무운영	26	1	8	2	15
		전기운영	2				2
		농림운영	1				1
		보건운영·사무운영	3		3		
	전문 경력 관	소계	4		4		
		가군	1		1		
		비상대비업무	1		1		
		나군	3		3		
		학생수련지도	2		2		
		영상제작	1		1		
연구직	연구직계		18		2	16	
	연구사	기록연구사	18		2	16	
특정직	특정직계		388		166	222	
	일반직 3급상당 장학관		1		1		
	일반직 3급상당 교육연구관		3		3		
	일반직 4급상당 장학관		24		7	17	
	일반직 4급상당 교육연구관		7		7		
	일반직 5급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		45		24	21	
	장학사·교육연구사		308		124	184	
별정직	별정직계		5		5		
	4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5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6급 상당	소계	2		2		
		비서	2		2		
	8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 개정이유 ◇

- 국가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강원교육정책 및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한 정원 조정을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직종·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 ▶ 일반직: 3,761명 → 3,761명(변동 없음)
 - 일반직 4급: 17명 → 18명 (증 1명)
 - 교육행정 4급 1명 증
 - 일반직 6급: 940명 → 941명 (증 1명)
 - 교육행정 6급 1명 증
 - 일반직 7급: 1,348명 → 1,349명 (증 1명)
 - 교육행정 7급 1명 증
 - 일반직 8급: 1,300명 → 1,297명 (감 3명)
 - 교육행정 8급 2명, 사무운영 8급 1명 감
- ▶ 특정직: 388명 → 388명(변동 없음)
 - 4급 상당 교육연구관 8명 → 7명 (감 1명)
 - 5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 44명 → 45명 (증 1명)

입 법 예 고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7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장려수당을 일부증액하여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별표 6] 장려수당 지급액 변경

- －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근무하는 공무원
(현 행) 월 270,000원 ⇒ (개정안) 월 370,000원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 주 소: (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총무과
- － 전 화: 033-249-2233
- － 팩 스: 033-249-4022
- － 이메일: moment13@korea.kr

4. 참고사항

○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6 중 “월 270,000원” 를 “월 370,000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지 급 대 상	지 급 액
1.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월 200,000원	1.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월 200,000원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근무하는 공무원	월 270,000원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근무하는 공무원	월 370,000원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조회 서식

성 명		주소/연락처	
-----	--	--------	--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8호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위한 기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제정 목적, 독립운동 기념 및 전시시설 등 설치 : 안 제1조 ~ 제2조
- 강원 독립운동 및 독립운동가 관련 유물 및 역사적 자료의 수집, 연구·보존·조사·관리 및 전시·홍보 등 : 안 제3조
- 기념시설 등의 관리·운영 위탁, 수탁기관의 의무: 안 제4조 ~ 제5조
- 기념시설 등의 위탁에 따른 관리·운영 경비의 지원, 연도별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결산서의 승인 및 제출: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 전 화: 033-249-2597
- 팩 스: 033-249-4037
- 이메일: jgm01@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붙임)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시행규칙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시설 등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5조에 규정된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독립운동 기념 및 전시시설 등(이하 “기념시설 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유물 등의 수집 및 전시)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및 독립운동가와 관련된 유물과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학술적 연구·보존·조사·관리 및 기념시설 등에서 전시·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항에서 규정한 유물 및 역사적 자료를 기증, 위탁, 관리·전환 받을 수 있으며, 기증을 받는 경우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에서 설립한 공사·공단

2.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수탁기관은 기념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념시설 등을 많은 도민이 이용하도록 운영에 최선을 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기념시설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기념시설 등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기념시설 등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⑤ 수탁기관은 기념시설 등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기념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기념시설 등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의견조회 서식

성 명		주소/연락처	
-----	--	--------	--

제 정 안	검 토 의 건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고 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65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철도) 결정(변경) 고시

1.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2월 1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가. 결정(변경) 취지

- 원주시 태장동에 위치한 기존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협소하고 공단직원의 숙소 등 근무환경 개선과 인원확충에 따른 업무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여 KTX 원주역 일원에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청사를 신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철도) 결정(변경) 하고자 함.

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787번지 일원 (KTX 중앙선 원주역)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총괄)

구분	용도지역	분류	면 적(m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계			867,778,920.0	－	867,778,920.0	100.00	
도시지역	도시지역 계		88,451,895.2	－	88,451,895.2	10.19	
	주거지역	소계	25,876,276.9	－	25,876,276.9	2.98	
		제1종전용	240,781.2	－	240,781.2	0.03	
		제2종전용	149,211.6	－	149,211.6	0.02	
		제1종일반	6,723,150.7	－	6,723,150.7	0.77	
		제2종일반	11,630,809.6	－	11,630,809.6	1.34	
		제3종일반	4,837,468.3	－	4,837,468.3	0.56	
		준주거	2,294,855.5	－	2,294,855.5	0.26	
		상업지역	소계	2,496,154.1	－	2,496,154.1	0.29
	중심상업		210,727.2	－	210,727.2	0.02	
	일반상업		2,257,081.9	－	2,257,081.9	0.26	
	근린상업		28,345.0	－	28,345.0	0.00	
	유통상업		0.0	－	0.0	－	
	공업지역	소계	6,361,459.7	－	6,361,459.7	0.73	
		전용공업	0.0	－	0.0	－	
		일반공업	4,868,714.1	－	4,868,714.1	0.56	
		준공업	1,492,745.6	－	1,492,745.6	0.17	
	녹지지역	소계	53,329,873.9	－	53,329,873.9	6.15	
		보전녹지	1,327,717.8	－	1,327,717.8	0.15	
		생산녹지	3,643,241.0	－	3,643,241.0	0.42	
		자연녹지	48,358,915.1	－	48,358,915.1	5.57	
	용도지역 미지정			388,130.6	－	388,130.6	0.04
비도시 지역	비 도시지역 계		779,327,024.8	－	779,327,024.8	89.81	
	관리지역	합계	275,645,001.7	증) 4,914	275,649,915.7	31.76	
		관리지역	321.0	－	321.0	0.00	
		보전관리	72,548,549.0	－	72,548,549.0	8.36	
		생산관리	41,031,772.5	－	41,031,772.5	4.73	
		계획관리	162,064,359.2	증) 4,914	162,069,273.2	18.68	
	농림지역		392,568,342.1	감) 4,914	392,563,428.1	45.24	
	자연환경보전지역		111,113,681.0	－	111,113,681.0	12.80	

※ 지정자료 : 원주시고시 제2023-395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1군지사 이전 이주단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원주시 무실동 787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4,914	100	금회 신설되는 철도시설(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청사)은 농지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업무시설)에 해당되어 농지전용이 불가하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철도)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 장 (m)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정	4	철도 (중앙선)	일반 철도	문막읍 동화리 산68-9	판부면 신촌리 산80	남원주 정거장	15,625	986,28 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94호 ('11.7.28.)	남원주정거장. 급전구분소, 남원주역 강원본부청사 중복결정
기정	5	철도 (남원주정거장)	일반 철도	무실동 780-15	무실동 806	-	1개소	63,55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94호 ('11.7.28.)	본선과 중복결정 강원본부청사 중복결정
신설	11	철도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청사)	일반 철도	원주시 무실동 766	원주시 무실동 787	-	1개소	9,353	금회	본선, 남원주정거장 중복결정

건폐율	용적률	높이
40% 이하	100% 이하	10층 이하

(2)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철도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청사)	· 철도 신설 및 건폐율·용적률·높이 결정 - 면적 : 9,353㎡ - 건폐율 40% 이하 - 용적률 100% 이하 - 높이 10층 이하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청사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철도) 신설

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철도)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 도시계획과(☎ 033-737-32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78호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산업시설용지 분양 재공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라 강원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 재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분양대상 토지

- 산업시설용지 : 133,631.8㎡ / 8필지
- 분양가격 : 150,976원/㎡(평당 499,094원)

구분	지번	면적(㎡)	분양가격(원)	유치업종
합계		133,631.8	20,175,194,640	
산업시설 용지	옥계면 현내리 1295	12,969.1	1,958,022,840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옥계면 현내리 1298	16,036.3	2,421,096,430	C24 (1차 금속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옥계면 현내리 1298-1	14,838.2	2,240,212,080	
	옥계면 현내리 1298-2	17,326.8	2,615,930,960	
	옥계면 현내리 1298-3	14,362.6	2,168,407,900	
	옥계면 현내리 1299	23,317.1	3,520,322,490	
	옥계면 현내리 1299-1	21,159.1	3,194,516,280	
	옥계면 현내리 1300	13,622.6	2,056,685,660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강원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 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입주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업 종 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입주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번호로서 통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제한 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를 제한함.

1.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할 경우 입주 허용)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 해당 개별공장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관련법 규정의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경우 입주 허용
 - 단, 현황농도가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물질(포름알데히드, 비소)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입주제한
3. 용수 및 에너지 다소비로 입주 부적격 업종, 악취 다량 배출업종
4. 인근 자연부락 또는 입주기업체에 환경오염, 악취, 소음·진동 등으로 주거 및 생산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
5. 사업공정 중 염색, 주물, 도금, 염료, 안료, 피혁 등이 있는 경우
6. 건강영향평가 대상 발암성물질(육가크롬, 벤젠, 니켈, 염화비닐, 카드뮴)이 연간 배출총량을 초과하는 사업장
7. 그 밖에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3. 분양 절차 및 일정 안내

○ 입주심사 신청 방법 : 입주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 방문접수

* 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해안로 231(천곡동)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북평옥계사업부 투자지원팀

- 연 락 처 : 033 - 539 - 7636

* 제출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 분양절차

입주심사 신청	⇨	자격검토 및 심의안 작성	⇨	입주심사 및 입주업체선정	⇨	입주업체 통보	⇨	분양계약 체결
입주희망업체 → 강원경제자유구역청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입주심사위원회 (강원경제자유구역청)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입주기업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입주기업

○ 분양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분양광고	2024. 2. 16. ~ 2024. 3. 8.(15일)	강원특별자치도·강원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산업입지 정보시스템,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신청서 접수	2024. 3. 11. ~ 3. 22.(10일)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북평옥계사업부 (방문접수, 접수시간 10:00 ~ 17:00)
입주심사	2024. 3. 25. ~ 3. 29.(5일)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 종합심사)
입주업체 확정 및 통보	2024. 4. 1. ~ 4. 3.(3일)	개별통보(유선)
입주(분양) 계약 체결	2024. 4. 4. ~ 5. 20.(30)	강원경제자유구역청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신청, 분양계약 체결 시간은 평일 10:00 ~ 11:30, 13:30 ~ 17:00까지입니다.(토, 일 및 공휴일 제외)

4. 입주대상자 결정

○ 입주 우선순위

- (1순위)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제품 및 첨단기술 투자기업, 강원경제자유구역청 핵심전략산업
- * 투자기업
- * 핵심전략산업 : 수소에너지 산업, 첨단소재·부품 산업
- (2순위) 수도권 및 타 시·도에서 공장을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
- (3순위) 1·2순위 이외의 업체

○ 입주대상자 결정방법

- 공고된 분양용지에 대해 1사 1필지 신청만 가능합니다.
- 유치업종 해당업체의 입주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여 입주심사 후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를 입주대상자(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 동일 필지에 2개 이상의 업체가 경합하는 경우
 - 입주심사위원회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 중 입주 우선순위의 업체를 공급대상자로 선정
 - 입주심사위원회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 중 최고득점자를 공급대상자로 선정
- 입주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 입주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별 산술 평균 점수를 계산하여 60점 이상인 업체 중 최고득점자를 공급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전년도 매출액, 고용인원 수, 시설계획 순으로 고득점자를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합되는 경우 추첨에 의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 경합 후 평가점수 60점 이상이나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잔여필지에 대해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입주업체로 선정된 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위·변조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박탈할 수 있고, 입주대상자로 결정되고 정해진 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은 당연 취소됩니다.

5.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입 주 신 청 시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해당시)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제조업)공장등록증명원 또는 (기타)사업개시신고서(해당시) ○ 입주심사 신청서 각 1부 - 입주심사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기업현황 요약서 1부 - 사실확인서·종람확인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업체) 각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고용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또는 개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1부 - 결산재무제표(최근년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평가) - 환경성 검토 요구서 1부	
	해당시 제출	-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1부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증빙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을 날인 하여 제출 ※ 재무제표는 직전년도 재무제표로 하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 입주업종 부적합시, 접수와 관계없이 부적격처리
분양계약 체결 시	○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1부 ○ 계약금(분양가격의 10%) 입금확인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 사업자 등록증명원 ○ 대표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신분증 등)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6. 분양금 납부 조건 및 방법

○ 분양금 납부 조건

구 분	계약금	잔 금
납부금액	10%	90%
납부시기	입주(분양)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60일)

○ 계약금 납부

- 입주계약 시 계약금(분양금액의 10%) 입금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면 취소됩니다.
- 납부방법은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합니다.

○ 계약금 귀속

- 계약금 납부 후 계약 체결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면 취소되며, 이 경우 계약금은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귀속됩니다.
- 계약금 납부 후 신청자격이 없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이 확인될 경우 이를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계약금은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귀속됩니다.
- 토지 위치 변경은 불가하며, 입주기업 요청에 의해 계약해지 시에도 계약금은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귀속되니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연손해금(연체료)

- 매매대금(잔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부과합니다.

지연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	--------	--------	--------	--------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연체료율	연 7%	연 8%	연 9%	연 10%

○ 토지 사용 및 소유권 이전

- 해당 필지는 사업준공 지구이며, 대금 전액 납부 후 공사착공 및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7. 주요세금 및 신고사항

- 제세공과금은 공급용지의 잔금 납부약정일, 대금완납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토지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처분제한 및 환수

- 산업시설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임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 또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가격으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거나 분양용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입주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3년) 내 공장 등의 건설 미 착수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때
 - 입주대상자가 부정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입주선정, 분양계약 체결한 것이 밝혀졌을 때
 -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 할 때
-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후 해당 산업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분양권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 입주계약 해지 후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금은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귀속되며, 분양대금 완납 후에 입주계약이 해지 된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처분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신청인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신청지역의 입주대상 업종이 아닐 경우에는 분양 후 현재하고 있는 업종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가 부정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입주선정, 분양계약 체결한 것이 밝혀졌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우리청에 귀속됩니다.
- 분양공고문, 인터넷 게시공고문, 지구계획 승인내용(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인허가 조건사항과 용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고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규제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내용을 따라야 하며, 공고일 이후 관계법령, 지자체 조례 등의 제정·개정,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의 규제내용이 강화될 경우에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 등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과 협의·처리하여야 하며 분양신청 전에 개발계

획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인·허가내용 및 승인조건, 용지이용에 관한 관련 법규, 건축규제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 등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매수인은 용지의 조성계획, 현황(형상, 고저, 암반, 석축 및 옹벽 발생여부, 외부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평면도, 특수구조물 현황 등),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암반의 제거 또는 암반제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면제거비용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청구(또는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매수인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해당 용지 매입 및 향후 건축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 확인·준수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경계확인측량을 실시한 후 설계 및 건축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설계 및 시공 오류로 인한 인접부지 침범시 매수인의 책임으로 원상복구토록 합니다.

○ 전력·통신·가스·상수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전 매수인이 직접 각 시설설치기관에 공급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입방법, 비용부담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 가로등, 전기공급시설, 상·하수 시설 등의 공공시설물은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매수자가 건축시에는 이를 확인후 설계하여야 하고,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공공시설물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한전, 시청 등)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시설을 부지 이외에 설치 또는 적재한 경우는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분양업무 담당자 및 인·허가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미 협의된 시설물 무단점유 및 자재적치 등은 즉시 철거 및 기반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 및 자재 등을 타 부지 내 무단투기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공급부지 내 우수 및 지하수 등의 처리는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서 설치한 간선시설인 우수관 내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하 저류조 등을 통해 오수관으로 처리되어 하수처리장 및 오수관 등의 용량이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사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산업단지 내 도로시설물은 도로관리청인 강릉시로 시설물 이관 완료되었으므로, 건축공사(진출입부 설치, 우·오수 간선시설 연결시설 등)를 위한 도로점용, 굴착 등은 도로관리청과 관련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본 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시설은 별도의 정수시설 및 저류시설이 없이 하천수를 직접 공급하므로 갈수기 원수 고갈로 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집중호우 시기에는 탁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질·수량을 공급받고자 하는 매수인께서는 자체 저류조 및 정수시설을 설치하시어 사용하셔야 하며, 폐수 방류시 별도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1차 처리 후 방류하여야 합니다.

○ 본 산업단지는 저지대 대심도 연약지반으로 “불임 3”의 건축물 안전시공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설계·시공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는 입주심의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요구(입주심사 시 발표 등)에 응해야 합니다.

○ 매수인은 본 계약체결 이후에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한 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10. 문의처

○ 기반시설 등 입주계약 관련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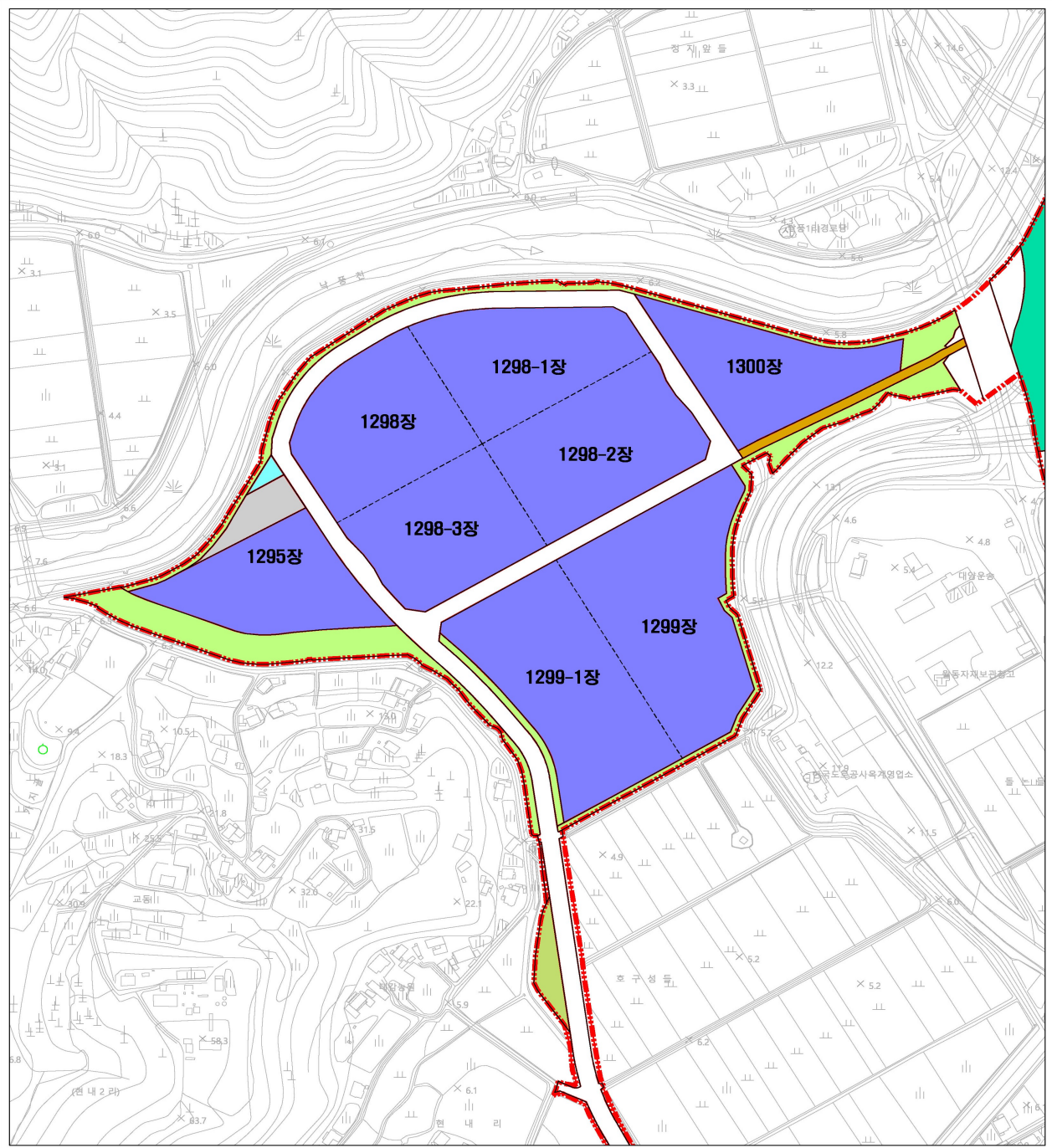
－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북평옥계사업부 투자지원팀 (033-539-7636)

○ 투자 인센티브 관련문의

－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북평옥계사업부 투자유치팀 (033-539-7672)

－ 강릉시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033-640-5204)

※ 2024. 1. 1. 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붙임 1**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획지 구분도**

옥계|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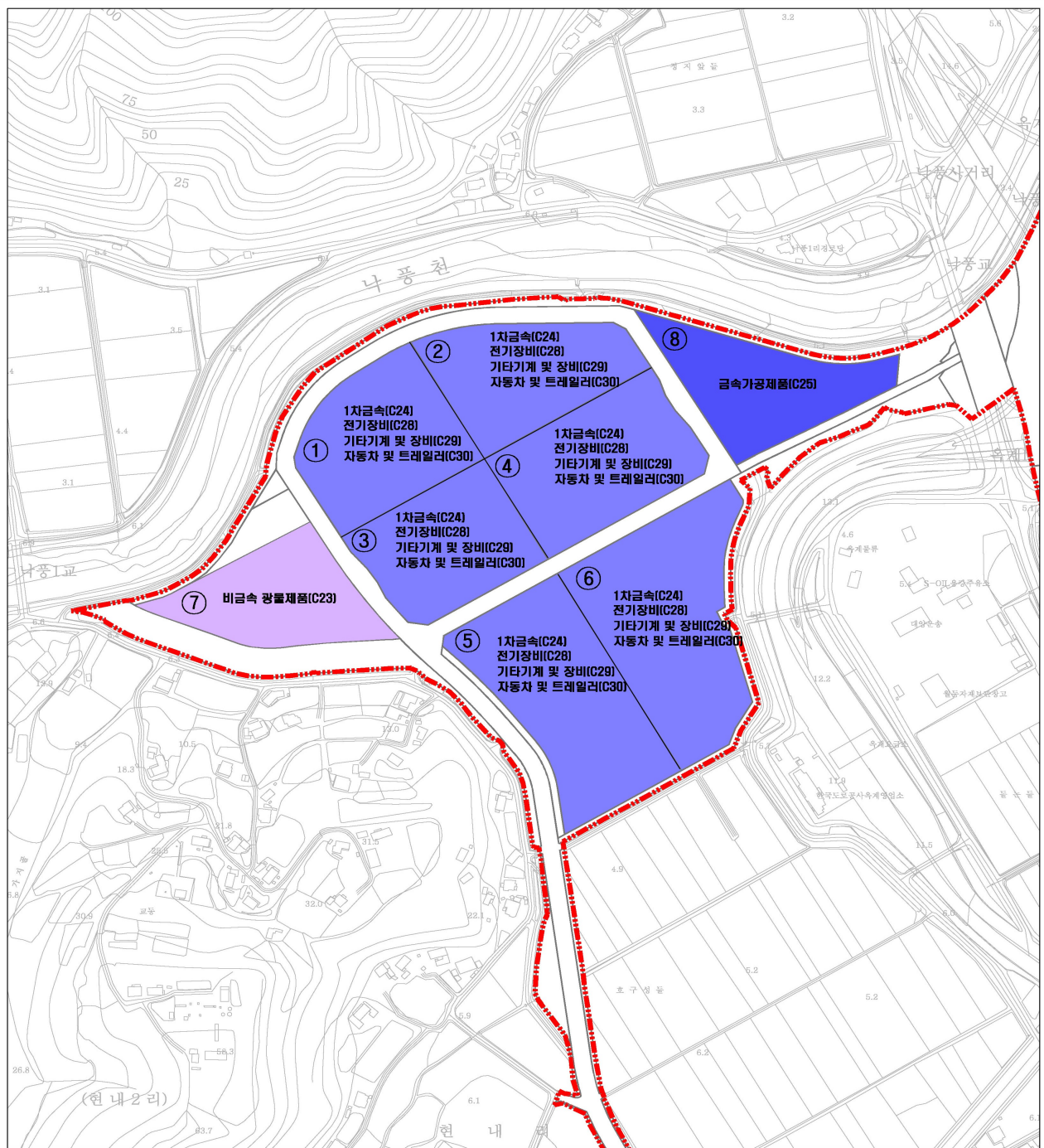
획지 구분도

판
 레



구
 획
 산업유통시설용지
 광
 녹

공
 보
 수
 주
 도

붙임 2**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업종별 배치계획도**

옥계|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유치업종배치계획도

범
례

--- 구역계

--- 획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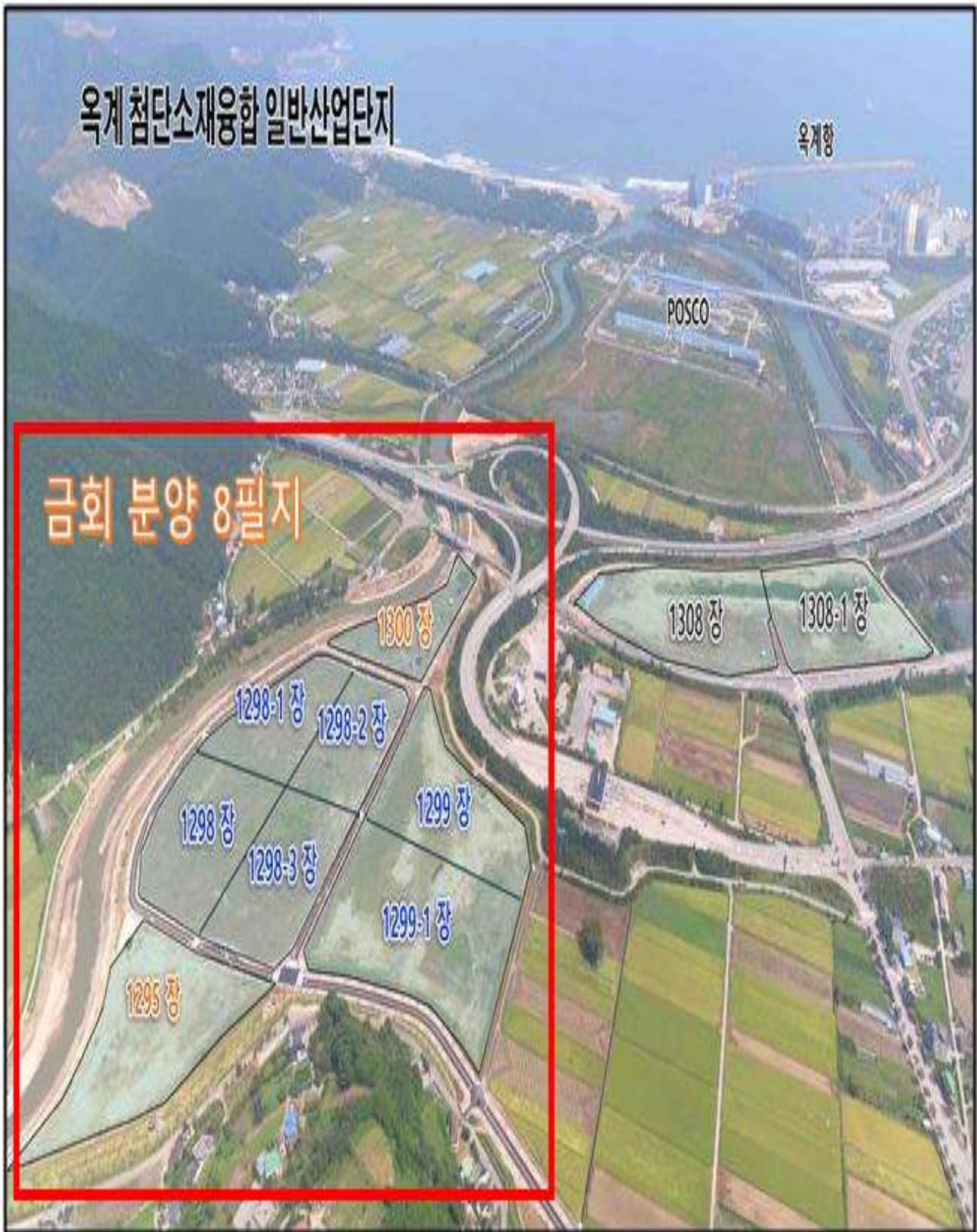
1차금속 제조업(C24)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붙임 3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위치도



붙임 4**연약지반상 건축물 안전시공 유의사항**

1. 필요시 지정용도 사용에 따른 건축을 위한 지질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연약지반 처리된 용지에서 축조되는 건축물의 침하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토지를 분양받은 후 외부토사의 용지내 성토지양
 - 나. 굴착공사에서 배출된 굴착토사의 장기간 지상적재 지양
 - 다. 건축물의 상부하중이 기초지반의 지지력보다 크지 않게 함
 - 라. 얇은 기초를 가진 건축물의 중량화를 피함
 - 마. 중량 지장물의 지상적재 피함
 - 바. 지하수위 유출 및 배출 억제
 - 사. 지반침하를 유발할 수 있는 심정개발 억제
 - 아. 압밀침하가 완료된 후 건축물 축조
 - 자. 원지반을 굴착하여 배토중량을 고려함
 - 차. 기타 건축물의 침하에 영향을 주는 사항 금지
3. 건축물 상부구조의 설계는 건축사 등 건축기술자, 하부구조 설계는 토질 및 기초 기술사 등 토목기술자, 건축물 터파기공사, 기초공사, 관로공사 등 토목공사는 해당면허를 가진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건축물 배치시 연약지반과 양질지반의 경계면에 건축물이 위치하는 것을 피하고 연약지반의 두께가 상이한 경계면에 건축물이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건축 전용면적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여 연약지반상에 균등하중이 작용토록 하여야 합니다.
5. 건축물 주변의 용지에 굴착토사를 적재할 경우 지반침하가 발생하게 되므로 건축주는 용지 조성시 당초의 부지 계획고를 준수하여 그 이상으로 높이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6. 건축관계자는 용지 계획고를 결정하기 전에 과한 추가성토 등으로 지반의 과대압밀침하로 인한 지반파괴 및 구조물 접속부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7. 굴착토사를 굴착상단 지면의 직상부에 적재하게 되면 과재하중으로 굴착면이 위험하게 되고 심하면 붕괴될 수도 있으므로 멀리 떨어진 곳에 적재하여야 하며 굴착토사를 굴착상단 지면의 한 장소에 높게 쌓아두면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어 부득이 굴착토사를 지상 적재할 경우에는 균등한 높이로 가능한 넓게 쌓아두어야 안전합니다.
8. 굴착 공사중 인접구조물에 대한 이상유무를 육안 또는 필요시 계측기 등으로 상세히 관측하여야 합니다.
9. 건축물 굴착공사 완료 후 되메우기가 불량할 경우 관로주변에 침하가 발생하므로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물 배면의 되메우기 부분은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되 건물에 영향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10. 연약한 택지에서는 건축물과 주변의 시설물 사이에 단차가 발생하여 주변 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물 및 주변시설물은 기초를 보강하여 지반침하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소규모 구조물(계단, 주차장, 정문, 담벽 등)에 대한 기초공사도 철저히 시공해야 하며 기초보강 대상 구조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가. 건축물 출입구 계단

나. 건축물과 만나는 보도, 포장, 화단

다. 운동장 스탠드 및 식수대

라. 학교, 관공서 등의 정문

마.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

11. 각종 지중관로의 접속 경계부에 대해서는 부등침하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호박스, 보호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스리브 접합등 유연성 있는 접합방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반침하 및 상재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성을 갖는 제품 사용이 바람직합니다.

12. 관거 부등침하는 관거 파손으로 누수 또는 지하수의 침투를 초래하여 관거 주변의 토사유입으로 유지 관리면에서 큰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기초공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되메우기 시에는 양질재료를 사용하여 다짐을 철저히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부실시공에 의한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시공하여야 합니다.

13. 연약지반상에 축조되는 건축물, 지중관로 등의 시설물은 장기적인 침하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시설물 주변의 지면에 추가적으로 토사, 지장물 등을 적재하게 되면 지면 침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양토록 하고, 시설물을 추가 증축하는 경우 지반지지력 및 지반침하량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14. 연약지반 처리된 용지에서 피압대수층 등에서의 심정개발은 지하수위 저하로 인해 매입대상용지 및 인접부지에 장기 침하발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부득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되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15. 연약지반 처리된 용지는 현장내 토취원으로부터 확보된 건설재료(토사 및 암버력) 등을 이용하여 조성된 부지로 건축공사를 위한 기초 터파기 및 구조물 기초공사 시 암버력(최대직경 300mm이하)이 출현될 수 있으므로 분양받은 토지의 사용자는 이를 감안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6.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에는 PBD공법 및 선행재하공법 등의 연약처리공법이 적용되었으며 연약지반처리와 관련하여 허용잔류침하량에 따른 1차 잔류 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허용잔류침하량에는 2차 압밀에 따른 장기 침하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지의 사용자는 연약지반처리 현황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합니다.

■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입주심사위원회[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입주심사 신청서

신청 기관	기업(기관)명	국문				대표자 성명					
		영문									
	연락처	전화번호			FAX						
	주 소										
	설립일자			홈페이지							
	기업현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입주 신청 내용	신청부지				면적	㎡					
	입주형태	분양									
	입주업종	업종코드 (5단위)			업종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										
	입주예정일	입주예정일									
담당자 연락처		(성명)	(전화)	(이메일)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에 입주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기관)명 대표자 (인)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입주심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2. 기업현황 요약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업체)
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고용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1부 또는 (개인사업자) 개인인감증명서 1부
6. 제출자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7. 결산재무제표(직전년도)(세무사/공인회계사확인)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평가)
9.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1부
10. 종람확인서 1부, 사실확인서 1부
11.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입주심사위원회[별지 제2호 서식]

기업 현황 요약서(기업명 :)

구 분	항 목	결 과	확인서류
기업규모	매출액	억원	최신년도 재무제표
안정성	부채비율	%	최신년도 재무제표
	영업이익율	%	최신년도 재무제표
	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전전망	고용인원	명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명부 (2023년 12월 기준)
기술능력	특허, 실용신안	개	증서 사본

1) 타인자본(부채총계)/자기자본(자본총계) × 100
2) 영업이익/매출액 × 100

■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입주심사위원회[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 위임을 받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임자 관계			
위임 사유			
본인은 상기 피위임인에게 20 년 월 일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입주 신청과 관련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

권리의 소재지	소 재 지

■ 위임한 부분

- 20 년 월 일 실시하는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입주신청의 책임과 권한
- 상기 위임인이 대리로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입주 신청한 결과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위 임 자 -

상 호 :

대 표 자 :

(인감날인)

주 소 :

첨부 : 위임자의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입주심사위원회[별지 제4호 서식]

사 실 확 인 서

☐ 소 재 지 :

☐ 상 호 :

☐ 대 표 자 :

☐ 법인번호(주민번호) :

☐ 입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 사실 확인내용

- 위 업체(자)는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분양공고 및 관련안내서를 확인하고 통계청 분류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적합 업종으로 입주 신청하였음을 확인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된 동 지구의 분양공고에 명시된 업종(세세분류/5단위 업종코드)을 영위할 것을 확인함
- 공정상 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 관련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입주선정은 자동 취소됨을 확인함

작성자(신청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귀중

■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입주심사위원회[별지 제5호 서식]

종 략 확 인 서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산업시설용지 등 공급대상용지 입주를 신청함에 있어 사전에 입주업체 선정방법(자격확인, 입주심사, 추첨) 및 홈페이지 게시공고문(각종 첨부물 포함), 기타 열람도서 등의 모든 사항을 확인·숙지하였으므로 추후 분양받은 용지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귀 청에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귀중

■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입주심사위원회[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의거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입주신청을 함에 있어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제공) 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분양(입주) 신청, 각종 안내문 발송 및 안내전화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신청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3. 보유 및 이용기간 : 영구
4. 수집된 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된 개인정보는 법령상의 정하는 바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 정보 수집 · 이용(제공)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 5개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분양(입주)신청자

성명:

(인)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귀중

■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입주심사위원회[별지 제7호 서식]

환 경 성 검 토 요 구 서

1. 사 업 개 요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상 호 :

○ 공 장 소 재 지 :

○ 공장건설계획

- 부 지 : m²

- 건 물 : m²

- 생산제품명 :

- 제품생산량 :

제 품 명	일생산량	연간생산량

- 자 산 총 액 : 백만원

- 종 업 원 수 : 명

○ 기 타 사 항

2. 시설설치계획

시 설 명	용 량	규 격	수 량	비 고

3. 원료(부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기타 사용량

가. 원료(부원료)사용량 및 화학조성비(분자식)

원료(부원료)명	일사용량	연간사용량	화학조성비(분자식)	비 고
				1일 : 시간 1월 : 일 1년 : 일 가동시

나. 제품생산량

제 품 명	일생산량	연간생산량	비 고
			1일 : 시간 1월 : 일 1년 : 일 가동시

다. 연료사용량

시 설 명	연 료 명	일 일 사 용 량	비 고

라. 용수사용량

용수사용량	사 용 내 역		배 출 내 역				비 고
	생활용수	공업용수	폐 수	냉 각 수	세 척 수	생활용수	
m ³ /일							

4. 배출시설 설치계획

배출시설명	용 량	수량	방지시설명	용 량	수 량
1. 대기배출시설			1. 대기오염방지시설		
2. 폐수배출시설			2. 수질오염방지시설		
3. 소음진동배출시설			3.소음진동방지시설		
4. 폐기물			4.폐기물처리계획		

5. 생산공정도

생 산 공 정 도	생산공정 요약설명
↓ ↓ ↓ ↓	

6. 배출예상 오염물질량 및 농도

구 분	배 출 량	오염물질명	처리전배출농도	배출허용기준	처리후배출농도
대 기					
수 질					
소 음 진 동					
폐기물					

7. 배출시설 및 예상오염물질내역

가. 대기분야

◦ 대기배출시설 및 배출농도

배 출 시 설			방 지 시 설		처리전 (mg/Sm ³)		처리후 (mg/Sm ³)	
시 설 명	단 위	수 량	시 설 명	수 량	오염물질	농 도	오염물질	농 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해 당해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사항 표시

나. 수질분야

◦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농도

배 출 시 설			방 지 시 설		처리전 (ppm)		처리후 (ppm)	
시 설 명	단위	수량	시 설 명	수량	오염물질	농 도	오염물질	농 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해 당해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 표시

다. 소음, 진동분야

◦ 소음, 진동 배출시설 및 배출농도

배 출 시 설			방 지 시 설		처리전 dB(A)	처리후 dB(A)
시 설 명	단 위	수 량	시 설 명	수 량		

※ 소음, 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당해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사항 표시

8. 폐기물 종류별 배출량 및 처리대책

폐기물종류	일일배출량	처 리 계 획

9. 주변환경조서

가. 위 치 도

나. 공장입주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업계획서 및 기계설비 사양 등을 분석한 결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대 기 :

2) 수 질 :

3) 소음·진동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
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10.5>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단지입주 [] 계약
[]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입주 계약 신청 내용	공장(사업장) 소재지				
	입주형태	[] 분양	[] 임차	[] 양도·양수	[] 기타
	회사명		대표자 성명		
	업 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생산품(서비스)
	규 모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기 존 공 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규 모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계약 변경사항, 사유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이
이
이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이
의
의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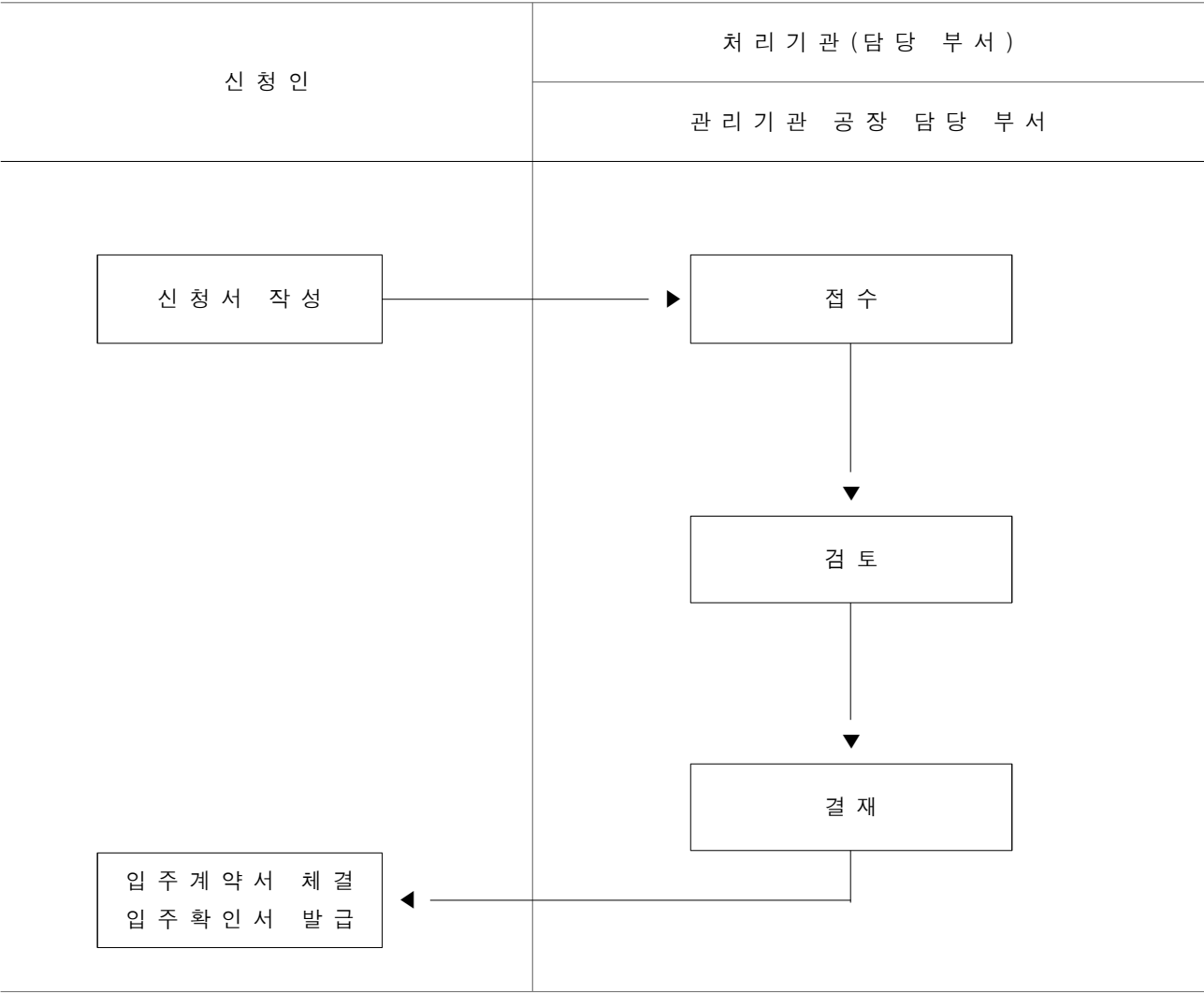
직인

(뒤쪽)

첨부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85호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공개 모집(안)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지식기부를 통하여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할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2월 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모집개요

-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제8조 및 제9조
- 모집인원 : ○○명
- 임 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업무내용

- 대리인 선정 없이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지식기부를 통하여 불복 대리업무를 수행
- 선정 대리인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명단 게시, 임기를 마친 선정 대리인은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위원 위촉 시 우대

□ 지원자격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세무업무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24. 2. 8.(목) ~ 2. 26.(월)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1부(붙임 서식), 서약서 1부(붙임 서식),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음

○ 제출방법 : 우편(공모기간 마감일 소인 유효), 직접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 제 출 처

－ 우편 또는 직접제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세정과(우24266)

－ 이메일 : anjune1001@korea.kr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세정과(☎ 033-249-2881)로 문의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신청서

1. 성명	(한자)		생년월일		
2. 자택주소	(우편번호 :)				
3. 전화번호	(자택)	(직장)	(휴대전화)	(팩스)	
4. 직장	주소 : (우편번호 :)				
	직장명 :		부서명 :		
	직위 :		담당업무 :		
5. 학력	졸업연월일	출신학교	학위구분	졸업구분	전공분야
6. 주요경력	근무기간 (시작 ~ 종료)	근무처	주요업무경력		
7. 기타사항 (자격증 등)					

2024. . .

신청인(추천단체)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 기본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 주소			
자격구분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e-mail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 동의내용

- ☐ 본인을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 대리인 지정통지를 한 때에 해당 불복청구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 본인은 지식기부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으로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등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 ☐ 수집·이용목적: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위촉, 지정통지 및 관리 등
- ☐ 수집대상 개인정보: 동의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 ☐ 보유·이용기간: 위촉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

☒ 상기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 (해당 ☐ 안에 ☒ 표시)

☐ 모두 동의함

☐ 모두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위촉이 제한될 수 있음

2024. . .

위 동의자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 약 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한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신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사건 지정을 거부하지 않는다.
1.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구체적 사건현황과 청구인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 비밀을 엄수할 것이며,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2024. . .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성 명: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위 축 징

소 속 :

성 명 :

귀하를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 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4. . . ~ 2026. . .)

년 월 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시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채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 제8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2.6.30.>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선정대리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 ⑦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⑧ 도지사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도지사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⑥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추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장·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신청서

1. 성명	(한자)		생년월일		
2. 자택주소	(우편번호 :)				
3. 전화번호	(자택)	(직장)	(휴대전화)	(팩스)	
4. 직장	주소 : (우편번호 :)				
	직장명 :		부서명 :		
	직위 :		담당업무 :		
5. 학력	졸업연월일	출신학교	학위구분	졸업구분	전공분야
6. 주요경력	근무기간 (시작 ~ 종료)	근무처	주요업무경력		
7. 기타사항 (자격증 등)					

2024. . .

신청인(추천단체)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 기본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 주소			
자격구분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e-mail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 동의내용

- 본인을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 대리인 지정통지를 한 때에 해당 불복청구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지식기부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으로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등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목적: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위촉, 지정통지 및 관리 등
- 수집대상 개인정보: 동의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위촉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

☞ 상기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 (해당 □ 안에 √ 표시)

☐ 모두 동의함

☐ 모두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위촉이 제한될 수 있음

2024. . .

위 동의자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 약 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한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신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사건 지정을 거부하지 않는다.
1.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구체적 사건현황과 청구인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 비밀을 엄수할 것이며,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2024. . .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성 명: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 군 행 정

춘천시 고시 제2024-73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춘천시 고시 제2023-457호(2023. 10. 20.)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동내면 학곡리 856번지 일원의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춘 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5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춘천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주차시설 조성)
3. 면적 또는 규모
 - 가. 면 적 : 6,083.9㎡
 - 나. 규 모 : 주차장 조성 A=6,083.9㎡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춘천시장(기후에너지과장)
 - 나. 주 소 : 춘천시 시청길 11 (옥천동)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일 후
 - 나. 준공예정일
 - 기정 : 2023. 12. 31.
 - 변경 : 2024.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있음)

가.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 권리			비고
					결정 면적	기타 면적	합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동내면 학곡리	108-20	전	6	0.3		0.3	춘천시					
2	"	108-15	전	292	18.7		18.7	춘천시					
3	"	567-21	구	228	47		47	춘천시					
4	"	산61	임	4,146	3,961.5		3,961.5	춘천시					
5	"	101-25	임	3,778	1,367.4		1,367.4	춘천시					기정
	"	101-25	임	1,865	1,367.4		1,367.4	춘천시					변경
6	"	848	차	64,253.1	25		25	춘천시					기정
	"	848	차	59,806.8	25		25	춘천시					변경
7	"	856	잡	924.2	664		664	춘천시					기정
	"	856	잡	826.4	664		664	춘천시					변경
합 계					6,083.9		6,083.9						

나. 지장물조서 : 해당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원주시 고시 제2024-50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일반광장802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원주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원 주 시 장

□ 실시계획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원주시 반곡동 1910-4번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일반광장802호) 조성사업
 - 명칭: 원주 일반광장802호 조성사업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원주시장(안전도시과장)
 - 주소: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결정면적(㎡)	금회시행(㎡)	비고
일반광장802호	6,249.3	6,249.3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2024. 2. 16. ~ 2024.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토지조서

구분	행정 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반곡동	1910-4	공	6,249.3	6,249.3	원주시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고시 제2024-51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관설 반도 유보라) 지형도면 승인고시

- 1.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관설 반도 유보라)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로 결정(변경)[원주시고시 제 2024-44(2024.02.02.) 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 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2월 16일

원 주 시 장

- 1. 원주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64	관설동 1426번지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관설 반도 유보라	관설동 1426번지 일원	26,223	감) 26	26,197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원주시 전체(변경 없음.)

구 분	용도지역	분 류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계			867,778,744.0	감) 26	867,778,718.0	100.00	
도시지역	도시지역 계		88,451,895.2	감) 26	88,451,869.2	10.19	
	주거지역	소계	25,876,100.9	감) 26	25,876,074.9	2.98	
		제1종전용	240,781.2	—	240,781.2	0.03	
		제2종전용	149,211.6	—	149,211.6	0.02	
		제1종일반	6,723,150.7	—	6,723,150.7	0.77	
		제2종일반	11,630,669.6	감) 26	11,630,643.6	1.34	
		제3종일반	4,837,432.3	—	4,837,432.3	0.56	
		준주거	2,294,855.5	—	2,294,855.5	0.26	
	상업지역	소계	2,496,154.1	—	2,496,154.1	0.29	
		중심상업	210,727.2	—	210,727.2	0.02	
		일반상업	2,257,081.9	—	2,257,081.9	0.26	
		근린상업	28,345.0	—	28,345.0	0.00	
		유통상업	0.0	—	0.0	0.00	
	공업지역	소계	6,361,459.7	—	6,361,459.7	0.73	
		전용공업	0.0	—	0.0	0.00	
		일반공업	4,868,714.1	—	4,868,714.1	0.56	
		준공업	1,492,745.6	—	1,492,745.6	0.17	
	녹지지역	소계	53,329,873.9	—	53,329,873.9	6.15	
		보전녹지	1,327,461.0	—	1,327,461.0	0.15	
		생산녹지	3,643,241.0	—	3,643,241.0	0.42	
		자연녹지	48,359,171.9	—	48,359,171.9	5.57	
	용도지역 미지정		388,130.6	—	388,130.6	0.04	
비도시지역	비 도시지역 계		779,327,024.8	—	779,327,024.8	89.81	
	관리지역	합계	275,645,001.68	—	275,645,001.68	31.76	
		관리지역	321.0	—	321.0	0.00	
		보전관리	72,548,549.0	—	72,548,549.0	8.36	
		생산관리	41,031,772.51	—	41,031,772.51	4.73	
		계획관리	162,064,359.17	—	162,064,359.17	18.68	
	농림지역		392,568,342.12	—	392,568,342.12	45.24	
	자연환경보전지역		111,113,681.0	—	111,113,681.0	12.80	

※ 원주시고시 제2024-37호(2023.02.02.)의 고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

1) 용도지역 결정(변경): 대상지(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26,223	감) 26	26,197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6,223	감) 26	26,197	100.0	

※ 지구단위구역 내 지적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으로, 사업구역 변경 없음.

나.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변경 없음.

1) 고도지구: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제한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22-1	관설 3-1지구	고도지구	관설IC 인근 제2종일반주거지역	45m 이하 (부지에 접한 대로 1-4호선의 평균계획고 기준)	182,168 (26,197)	강고 제51호 (03.02.27)	

※ () 사업지구 내 면적

2) 시가지경관지구: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9	대로 1-4호	시가지 경관지구	대로1-13~관설동 제2종일반주거지역계 (관설동 1281-11 답)	19,045 (1,385)	2,770 (110)	양측 12	강고 제51호 (03.02.27)	

※ () 사업지구 내 면적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교통시설 : 변경 없음.

가) 도로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4	35~38	주간선 도로	4,732 (81)	광로 3-5	관설동 294-3	일반 도로		건고 제283호 (1967.4.19)	
기정	소로	1	161	10~15	집산도로	404 (225)	대로1-4 관설동 1426-26대	대로 2-3 관설동 1712	일반 도로		강고 2003-51호 (2003.2.27)	
기정	중로	3	149	12~15	집산도로	92 (92)	소로1-161 관설동 1412-2 답	대로2-3 관설동 1426-12	일반 도로		원고 제2003-471호 (2023.12.15)	

※ ()는 도로 사업 시행 구간임.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변경.

도면표시번호			가 구				비율 (%)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26,223	감) 26	26,197	100.00
공동주택용지 (A)	소 계		－	21,928	감) 50	21,878	83.51
	A-1	공동주택	관설동 1426번지 일원	21,928	감) 50	21,878	83.51
기반시설용지 (B)	소 계		－	4,295	증) 24	4,319	16.49
	B-1	도로(대로 1-4)	관설동 1426번지 일원	222	－	222	0.85
	B-2	도로(소로 1-161)	관설동 1408-4번지 일원	2,945	증) 1	2,946	11.25
	B-3	도로(중로3-149)	관설동 1412-2번지 일원	1,128	증) 23	1,151	4.39

※ 지구단위구역 내 지적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으로, 사업구역 변경 없음.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동주택용지 (A-1)	반곡동 1507-1번지 일원	용도	· 지정용도: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용적률	· 250%
		높이	· 고도지구 기준 이하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형태	
		색채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5M (아파트에 한함.)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변경 없음.

- 1) 공동주택용지 주 출입구 및 부 출입구에 한하여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 2) 진·출입구를 제외한 전 구간 차량 출입 불허 구간 지정.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도: 게재 생략.

원주시 고시 제2024-52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원동 나래지구)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원동 나래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로 결정(변경) [원주시고시 제2023-41 (2024.02.02.) 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 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2월 16일

원 주 시 장

1. 원주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31	원동 나래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원주시 원동 산10-1번지 일원	49,257	증) 82	49,339	원동나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 없음.
- 1) 용도지역 결정(변경): 변경 없음.

구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49,257	증) 82	49,339	1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49,257	증) 82	49,339	100	

※ 사업면적 변경이 수반되나 용도지역 변경 해당 없음.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 없음.
- 1) 경관지구: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2	중로1-23	시가지경관 지구	광장4호~ 광3-5	39,989 (1,647)	3,662 (140)	양측 12 (12)	강고 제77호 (09.02.27)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임.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교통시설 : 변경 없음.

가) 도로 지형도면 승인 조서: 변경 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3	20 ~23	주간선 도로	1,840	4호광장	대로 1-4	일반 도로	-	강고 제30호 92.3.19	-
기정	중로	2	69	15 ~18	국지 도로	352	중로 1-23	중로 1-5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516	10 ~11	국지 도로	160	중로 1-23	중로 1-23	일반 도로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²)			
				기정	증감	변경	
계		—	—	49,257.00	증) 82	49,339	
—	A	1	원주시 원동 산10-1번지 일원	43,483.00	증) 99	43,58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원주시 원동 27번지 일원	1,346.00	증) 1	1,347	근린생활시설
		3	원주시 원동 248-2번지 일원	4,428.00	감) 18	4,410	기반시설 (도로)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A-1	원동 산10-1번지 일원	용 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20.58% 이하
			용 적 률	· 250%이하
			높이(층수)	· 22층 이하
			배치·형태	· 도면 참조
			색 채	· 원주시 경관형성 기본계획 반영
			건 축 선	· 중로1-52호 도로변 6M · 중로2-69호 도로변 3M · 중로1-23호 도로변 3M
기정	A-2	원동 27번지 일원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50% 이하
			용 적 률	· 230%이하
			높이(층수)	· 5층 이하
			배치·형태	· 도면참조
			색 채	· 원주시 경관형성 기본계획 반영
			건 축 선	· 정비계획 조서 참조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적 용 기 준	비고
차량진출입허용구간	중로 2-69호 선변	주출입구 가감속차로 포함
	중로 1-23호 선변	부출입구 가감속차로 포함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도 : 게재 생략.

원주시 고시 제2024-53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주차장83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원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원 주 시 장

□ 실시계획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원주시 단계동 1080번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83호) 조성사업
 - 명칭: 백간지구(세무서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원주시장(교통행정과장)
 - 주소: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결정면적(㎡)	금회시행(㎡)	비고
주차장83호	1,504.0	1,365.0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2024. 2. 16. ~ 2024.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불임
-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토지조서

구분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단계동	947	도	37,034.6	230	원주시	원주시 시청로 1		
2	단계동	1080	잡	1,561.8	1,135	원주시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공고 제2024-393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1-7호 외2개소)사업 공사완료 공고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1-7호 외2개소)사업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원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우산동 300-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1-7호 외2개소)사업
 - 명칭: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교량가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원주시장(생태하천과장)
 - 주소: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시설결정		금회시행	향후시행	비고
	폭	연장			
중로1-7호	20~26.8m	755m	B=20.6m, L=17.44m	-	
중로3-4호	12~16.8m	793m	B=12.6m, L=17.6m		
중로3-13호	12~20.8m	370m	B=12.6m, L=21.9m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2021.03.26.~2023.12.31.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강릉시 고시 제2024-59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사천진리 공동주택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릉 도시관리계획(사천진리 공동주택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고시된 사항은 토지e음(<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7일

강 릉 시 장

I. 결정(변경) 취지

： 토지 합병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결정(변경)하고자 함.

II. 위 치: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912번지 일원

III. 강릉 도시관리계획(사천진리 공동주택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변경)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사천진리 공동주택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천면 사천진리 912번지	25,437	감) 105.4	25,331.6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변경	-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912번지 일원	25,437→25,331.6 (감 105.4)	토지 합병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②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변경)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5,437	감)105.4	25,331.6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5,437	감)105.4	25,331.6	100.0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결정(변경) 사유
-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912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25,437→25,331.6 (감 105.4)	토지 합병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75	8	국지 도로	75	소2-76 사천진 56-3답	소3-149 사천진 54-5답	일반 도로	강릉 제2018-138호 (2018. 5. 30.)	
기정	소로	2	76	8	국지 도로	325	소1-26 사천진 874-1도	소2-75 사천진 56-3답	일반 도로	강릉 제2018-138호 (2018. 5. 30.)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변경)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5,437	감)105.4	25,331.6	100.0	-	100	
1BL	①	사천진리 912번지 일원	21,543	감)137.4	21,405.6	84.7	감)0.1	84.6	공동주택 용지
	②	사천진리 66-6번지 일원	3,576	-	3,576	14.0	-	14.0	도시계획도로
	③	사천진리 67-7번지 일원	318	증) 32	350	1.3	증)0.1	1.4	가감속차로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변경없음)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 고
①	주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25%이하	
	용 적 륜		· 230%이하	
	높 이		· 지상 20층 이하	
	배 치		· 건축배치도 참조	
	색 채		· 강릉시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에 제시된 경관색채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용 · 경관성검토에 의한 색채계획	
	형 태		－	
	건축선		－	

IV. 강릉 도시관리계획(사천진리 공동주택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 실음 생략

강릉시 고시 제2024-6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산103번지 일원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3일

강릉시장

1. 사업의 명칭: 주문진읍 주문리 산103번지 일원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교보자산신탁(주) 대표 조혁중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가. 위 치: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산103번지 외 35필지
 - 나. 규 모
 - 1) 대지면적: 27,903㎡
 - 2) 연 면 적: 97,713.15㎡
 - 3) 주택형별: 아파트 555세대
(75㎡형 19세대, 84㎡형 530세대, 136㎡형 1세대, 142㎡형 1세대, 144㎡형 3세대, 153㎡형 1세대,)
 - 4) 사업규모: 지하2층 / 지상 25층 (6개동) /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 5) 사 업 비: 253,863,000천원
4. 사업시행기간: 2024. 4. 30. ~ 2027. 1. 31.
5.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사항
 - 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결정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마.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 바. 「하수도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주택과(☎640-54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의제 협의 조서
2.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협의 조서 1부. 끝

<붙임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의제 협의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㉔	주문2지구	주문리 산103번지 일원	-	증) 32,417	32,417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면적(㎡)	결정사유
신설	㉔	주문리 산103번지 일원	32,417	•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공동주택의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금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하고자 함

②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2,417	-	32,417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2,417	-	32,417	100.0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1)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	750	6,616	1	750	6,616	-	-	-	-	-	-
	변경	2	949	9,771	1	750	8,101	1	199	1,670	-	-	-
소로	기정	1	750	6,616	1	750	6,616	-	-	-	-	-	-
	변경	2	949	9,771	1	750	8,101	1	199	1,670	-	-	-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35	10	주간선 도로	750	중로2-1 주문리 605-20	중로1-1 주문리 873-1	일반도 로	-	2020. 06.10	-
변경	소로	1	35	10~ 20	주간선도 로	750	중로2-1 주문리 605-20	중로1-1 주문리 873-1	일반도 로	-	-	일부 확폭 (167m)
신설	소로	2	79	8	국지 도로	199	중로2-1 주문리 586-4	주문리 590-1	일반 도로	-	-	신설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1-35	소로1-35	- 일부구간 확폭 - B=10~20m - L=750m(167m)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주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도로의 일부구간을 확폭하고자 함
-	소로2-79	- 신설 - B=8m - L=199m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부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부지 남측에 도시계획도로 신설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번호		가구		비율 (%)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계		—	32,417	100.00
공동주택용지 (A)	소계		—	86.08
	A-1	공동주택	주문리 산 103번지 일원	86.08
기반시설용지 (B)	소계		—	13.92
	B-1	도로	주문리 595-7번지 일원	8.77
	B-2	도로	주문리 584-1번지 일원	5.15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동주택 (A-1)	주문리 산103번지 일원	용도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층 수		• 25층 이하
		배 치		• 건축배치계획에 의함
		형 태		• 철근콘크리트 구조
		색 채		• 강릉시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가이드라인 준용
		건축선		•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가구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	-	■ 교통처리 • 단지내 도로 - 단지내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이 되도록 설치 - 보행공간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의 비율을 최대한 확보 - 단지 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연결성이 용이하도록 설치 • 주차시설 -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담장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하되 인접대지 또는 인접도로의 소음저감 및 프라이버시 보호, 지형단차극복, 안전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으며, 투시형 또는 친환경적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마감하는 것을 권장 ■ 단지내 조경 - 조경 면적은 관련법규상 기준 면적이상 충분히 확보 - 상징적 주제공원은 1개소 이상 조성할 것을 권장 ■ 기타사항 - 단지 내 주요 지점에는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수집공간을 설치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 - 사업시행 시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 안내판, 포장패턴 및 가로시설물 등 종합적인 디자인계획을 가능한 수립하여 설치	

나. 구역 밖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붙임2>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35, 소로 2-79)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협의조서**

1. 사업시행자의 지정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강원도 강릉시 주문리 산10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사업의 명칭: 강릉 도시계획시설(소로1-35호선, 소로2-79호선)사업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1	35	10~20	주간선 도로	750 (167)	중로2-1 주문리 605-20	중로1-1 주문리 873-1	일반 도로	2020.6.1 0.	-
신설	소로	2	79	8	국지 도로	199	중로2-1 주문리 586-4	주문리 590-1	일반 도로		신설

주) ()는 사업지구내 폭원 및 연장 변경사항임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성명 : 교보자산신탁주식회사 대표자 조혁중

2)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A,B동 7, 8층

(서초동,교보생명보험(주) 서초사옥)

2.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강원도 강릉시 주문리 산10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사업의 명칭: 강릉 도시계획시설(소로1-35호선, 소로2-79호선)사업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1	35	10~20	주간선 도로	750 (167)	중로2-1 주문리 605-20	중로1-1 주문리 873-1	일반 도로	2020.6.1 0.	-
신설	소로	2	79	8	국지 도로	199	중로2-1 주문리 586-4	주문리 590-1	일반 도로		신설

주) ()는 사업지구내 폭원 및 연장 변경사항임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사업시행자 성명 : 교보자산신탁주식회사 대표자 조혁중
- 2)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A,B동 7, 8층
(서초동,교보생명보험(주) 서초사옥)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2025. 10. 31.

바. 자금조달계획

구 분	소 요 자 금			비 고
	계	소로 1-35	소로 2-A	
합 계	32.9	19.1	13.8	*자체조달자금 및 금융기관자금
토 지 매 입 비	23.8	14.7	9.1	
개 설 공 사 비	9.1	4.4	4.7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도로 무상귀속분

시설의 종류	시설의 세분	시설내용	면 적	비 고
도로	소로1-35호선	L=167m, B=10~20m	2,844㎡	도로 내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또한 귀속
도로	소로2-79호선	L=199m, B=8m	1,670㎡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1) 소로1-35호선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합계				29,149	2,844						
1	주문진읍 주문리	산89-2	도	909	275	건설부	건설부				
2	주문진읍 주문리	693-12	도	1,219	221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3	주문진읍 주문리	691-7	임	683	2	방○란	춘천시운교동111-2,				
						구○회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해 안로1921				
4	주문진읍 주문리	1378	도	1,557	22	건설부	건설부				
5	주문진읍 주문리	산99-4	도	298	16	건설부	건설부				
6	주문진읍 주문리	596-1	전	109	67	강릉시	강릉시				
7	주문진읍 주문리	595-7	도	251	251	건설부	건설부				
8	주문진읍 주문리	595	전	645	65	강릉시	강릉시				
9	주문진읍 주문리	1369-2	도	20,226	1,183	건설부	건설부				
10	주문진읍 주문리	1369	도	734	266	건설부	건설부				
11	주문진읍 주문리	597-4	도	212	50	건설부	건설부				
12	주문진읍 주문리	595-2	전	598	167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 로465 (서초동,강남교보타워)				
13	주문진읍 주문리	597-3	도	20	3	손○철	주문리 603				
14	주문진읍 주문리	595-1	도	3	3	함○호	주문리 313				
15	주문진읍 주문리	587-2	전	377	67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 로465 (서초동,강남교보타워)				
16	주문진읍 주문리	598-2	도	76	76	김○유	속초시 장사동 535				
17	주문진읍 주문리	587-4	도	63	63	이○택	주문리 717				
18	주문진읍 주문리	산105	임	1169	47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 로465 (서초동,강남교보타워)				

2) 중로2-79호선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합계				9,605	1,670						
1	주문진읍 주문리	583	답	1,385	202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 대로465 (서초동,강남교보타워)				
2	주문진읍 주문리	584	답	2,317	515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 대로465 (서초동,강남교보타워)				
3	주문진읍 주문리	584-1	답	1,203	196	이○구	서울특별시강남구일원 동690-1 대우아파트53동304호				
4	주문진읍 주문리	586-3	답	1,098	253	김○옥	울산광역시동구봉수로 100,704동1106호 (화정동,현대아파트)				
5	주문진읍 주문리	587	전	684	135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 대로465 (서초동,강남교보타워)				
6	주문진읍 주문리	586	대	344	152	김○태	서울 양천구 신월동 27-4				
7	주문진읍 주문리	587-8	대	331	3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 대로465 (서초동,강남교보타워)				
8	주문진읍 주문리	586-2	대	641	140	엄○숙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웨밀리아아파트 213동805호				
9	주문진읍 주문리	586-1	대	93	47	엄○숙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웨밀리아아파트 213동805호				
10	주문진읍 주문리	산105	임	1,169	2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 대로465 (서초동,강남교보타워)				
11	주문진읍 주문리	586-4	도	340	25	건설부	건설부				

강릉시 고시 제2024-67호

강릉 개발촉진지구 썬크루즈리조트 조성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1.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434(1998. 12. 30.)호로 지구 지정 및 강릉시 고시 제2021-6 (2021. 1. 8.)호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강릉 개발촉진지구 썬크루즈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고시된 사항은 토지e음(<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13일

강릉시장

□ 강릉 개발촉진지구 썬크루즈리조트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 가. 사업명 : 강릉개발촉진지구 썬크루즈리조트 조성사업
-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50-7번지 일원
- 다. 면 적 : 기정) 112,064㎡ → 변경) 122,051㎡ (증 9,987㎡)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주)승화썬크루즈 대표이사 박기열
-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현화로 950-39

3. 사업의 목표 및 개요

- 가. 목 표 : 사계절 종합휴양관광레저 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입 증가와 지역 주민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나. 개 요 : 기정) 호텔, 콘도1·2, 워터파크, 부대시설 등
변경) 콘도미니엄, 가족호텔, 생활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및 부대시설 등

4. 토지이용계획(변경)

-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
 - 1)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21-37	썬크루즈 리조트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정동진리 50-7번지 일원	-	112,064	1997.4.7	
변경	21-37	썬크루즈 리조트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정동진리 50-7번지 일원	-	122,051	1997.4.7	

2)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1-37	썬크루즈 리조트지구	◦ 면적 변경 112,064㎡ → 122,051㎡ 증) 9,987㎡	◦ 토지의 효율성 확보 및 체계적 개발계획 을 위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1-37	썬크루즈 리조트	제2종지구단위계획 관광·휴양형	정동진리50-7번지일원	112,064	증) 9,987	122,051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1-37	썬크루즈 리조트	◦ 면적 변경 112,064㎡ → 122,051㎡ 증) 9,987㎡	◦ 부지 내 부족한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증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번호	가 구 번 호	위 치	가 구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12,064	증) 9,987	122,051	
①	관광휴양시설용지	정동진리 50-14번지외	39,370	증) 20,487	59,857	
②	공공시설용지	정동진리 50-37번지외	28,513	감) 8,740	19,773	
③	녹지용지	정동진리 50-7번지외	44,181	감) 1,760	42,421	

2)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번호	구분	위 치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12,064	증) 9,987	122,051	◦ 면적 증가율 8.9% (9.987/112.064*100)
①	관광휴양시설용지 (소계)	—	39,370	증) 20,487	59,857	
①-1	콘도미니엄	정동진리50-14번지	10,315	증) 8,382	18,697	◦ 용도변경 호텔⇒콘도미니엄
①-2	가족호텔	정동진리50-11번지	19,340	증) 856	20,196	
①-3	위터파크	정동진리50-11번지	9,715	감) 9,715	—	폐지
①-4	생활형숙박시설1	정동진리50-9번지	—	증) 11,157	11,157	신설
①-5	생활형숙박시설2	정동진리50-14번지	—	증) 9,807	9,807	신설
②	공공시설용지 (소계)	—	28,513	감) 8,740	19,773	
②-1	주차장	정동진리50-37번지	24,870	감) 9,370	15,500	
②-2	도로	정동진리50-10번지	3,128	증) 249	3,377	
②-4	오수처리시설	정동진리50-9번지	515	—	515	
②-5	가스저장소	정동진리50-10번지	—	증) 381	381	신설
③	녹지용지 (소계)	—	44,181	감) 1,760	42,421	

도면 번호	구분	위 치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③-1	원형보전녹지1	정동진리50-13번지	5,488	증)204	5,692	
③-2	원형보전녹지2	정동진리50-7번지	18,306	증)1,044	19,350	
③-3	기타녹지1	정동진리50-10번지	13,420	감)10,297	3,123	
③-4	기타녹지2	정동진리50-10번지	-	증)676	676	신설
③-5	기타녹지3	정동진리52-2번지	1,662	증)251	1,913	
③-6	기타녹지4	정동진리50-144번지	-	증)3,362	3,362	신설
③-7	기타녹지5	정동진리50-8번지	1,785	증)502	2,287	
③-8	원형보전녹지3	정동진리50-11번지	1,950	증)220	2,170	
③-9	원형보전녹지4	정동진리50-11번지	1,570	증)38	1,608	
③-10	원형보전녹지5	정동진리50-97번지	-	증)2,240	2,240	신설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항 목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①-1	강동면 정동진리 50-14	용 도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15호시설 중 관광호텔 (호텔)	
			건폐율	45%이하	
			용적률	190%이하	
			높 이	지상11층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유람선형숙박,평지붕	
			색 채	해안경관에 어울리는 명암이 밝은색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항 목	계 획 내 용	비 고
변	①-	강동면	용 도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15호 중 관광숙박시설	

경	1	정동진리 50-14	건폐율	45%이하	
			용적률	190%이하	
			높 이	지상11층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유람선형숙박, 평지붕	
			색 채	해안경관에 어울리는 명암이 밝은색	
기 정	①- 2	강동면 정동진리 50-11	용 도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15호 중 관광숙박시설	3동
			건폐율	30.00%이하	
			용적률	90.00%이하	
			높 이	지상10층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유람선형숙박, 평지붕	
			색 채	해안자연경관에 어울리는 시각적 순환관계를 고려한 유사색채와 상징적인 지붕색	
신 설	①- 4	강동면 정동진리 50-9	용 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건폐율	40.00%이하	
			용적률	190.00%이하	
			높 이	지상10층이하, 시설물 높이 50m이하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3-14)에 의거 건축물 및 시설물 높이에 대해 공동위원회가 인정한 사항임)	
			길 이	건축물 길이 160m이내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3-14)에 의거 건축물의 길이에 대해 공동위원회가 인정한 사항임)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유람선형숙박, 평지붕	
			색 채	해안경관에 어울리는 명암이 밝은색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항 목	계 획 내 용	비고
신 설	①- 5	강동면 정동진리 50-14	용 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지상10층이하, 시설물 높이 50m이하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3-14)에 의거 건축물 및 시설물 높이에 대해 공동위원회가 인정한 사항임)	
			길 이	건축물 길이 160m이내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3-14)에 의거 건축물의 길이에 대해 공동위원회가 인정한 사항임)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유람선형숙박, 평지붕	
			색 채	해안경관에 어울리는 명암이 밝은색	
신 설	③- 6	강동면 정동진리 50-144	용 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의 공원시설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3-14)에 의거 녹지용지내 시설물 행위제한에 대해 공동위원회가 인정한 사항임)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60%이하	
			높 이	지상2층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색 채		

마.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 등의 권리명세서(변경)

구분	주소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소	성명	
합계				139,290	112,064	증)9,987	122,051			
1	정동진리	50-7	임	10,387	10,387	-	10,387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현화로 950-39	주식회사 승화썬크루즈	
2	정동진리	50-8	임	9,381	5,684	증)3,697	9,381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현화로 950-39	주식회사 승화썬크루즈	
3	정동진리	50-9	임	9,917	9,917	-	9,917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현화로 950-39	주식회사 승화썬크루즈	
4	정동진리	50-10	임	11,748	11,748	-	11,748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현화로 950-39	주식회사 승화썬크루즈	
5	정동진리	50-11	임	21,980	20,167	감)76	20,091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현화로 950-39	주식회사 승화썬크루즈	
6	정동진리	52-17	도	2,582	2,582	-	2,58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현화로 950-39	주식회사 승화썬크루즈	
7	정동진리	50-156	임	1,882	1,882	-	1,88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현화로 950-39	주식회사 승화썬크루즈	
8	정동진리	50-16	임	8,874	8,874	-	8,874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현화로 950-39	박기열	
9	정동진리	50-14	임	20,800	18,965	-	18,965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현화로 950-39	주식회사 승화썬크루즈	
10	정동진리	50-144	임	3,232	-	증)3,232	3,232	기획재정부	국	
11	정동진리	50-13	임	8,856	4,506	증)59	4,565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현화로 950-39	주식회사 승화썬크루즈	
12	정동진리	50-37	임	16,158	16,158	-	16,158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현화로 950-39	박기열	
13	정동진리	52-2	도	3,439	-	증)574	574	국토교통부	국	
14	정동진리	50-117	도	435	-	증)31	31	건설교통부	국	
15	정동진리	50-118	임	426	-	증)68	68	포남동 1180	박기열	
16	정동진리	50-143	임	808	808	-	808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현화로 950-39	주식회사 승화썬크루즈	
17	정동진리	50-119	임	437	-	증)31	31	포남동1180	박기열	
18	정동진리	50-97	임	7,562	-	증)2,371	2,371	포남동1180	박기열	
19	정동진리	52-18	잡	265	265	-	265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현화로 950-39	주식회사 승화썬크루즈	
20	정동진리	52-19	도	121	121	-	121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현화로 950-39	주식회사 승화썬크루즈	

5.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실시계획 승인일 ~ 2023. 12. 31.

변경: 실시계획 승인일 ~ 2029. 12. 31.

6. 변경사유

- 「2018평창동계올림픽」 종료 이후 정동진 썬크루즈리조트를 중심으로 정동진 어촌 뉴딜사업, 정동항 개발사업, 정동진 부채길 등 각종 관광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음
- 이에,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광지로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힐링공간을 제공하여 동해안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따라서 정동진에 부족한 가족단위 체류형 숙박시설 확충 및 동해안 제일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숙박시설 불균형 해소 및 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부 토지이용계획 조정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변경되어 부득이하게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사업기간 연장 등을 변경하고자 함.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자금조달계획 : 사업시행자 자체조달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건설교통국 도시과(☎033-640-5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㉔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관한 사항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1-37	썬크루즈 리조트	지구단위계획 (관광·휴양형)	정동진리50-7번지일원	112,064	증) 9,987	122,051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1-37	썬크루즈 리조트	◦ 면적 변경 112,064㎡ → 122,051㎡ 증) 9,987㎡	◦ 부지 내 부족한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증축에 따른 지구단위구역 변경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12,064	증) 9,987	122,051	100.0	
계획관리지역	112,064	증) 9,927	121,991	99.95	
자연환경보전지역	-	증) 60	60	0.05	

※ 지구단위계획구역 선형일치에 따른 면적 증감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21-37	썬크루즈 리조트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정동진리 50-7번지 일원	-	112,064	1997.4.7	
변경	21-37	썬크루즈 리조트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정동진리 50-7번지 일원	-	122,051	1997.4.7	

가) 용도지구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1-37	썬크루즈 리조트지구	◦ 면적 변경 112,064㎡ → 122,051㎡ 증) 9,987㎡	◦ 토지의 효율성 확보 및 체계적 개발계획을 위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가구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도면 번호	가 구 번 호	위 치	가 구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12,064	증) 9,987	122,051	
①	관광휴양시설용지	정동진리 50-14번지外	39,370	증) 20,487	59,857	
②	공공시설용지	정동진리 50-37번지外	28,513	감) 8,740	19,773	
③	녹지용지	정동진리 50-7번지外	44,181	감) 1,760	42,421	

2)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

도면 번호	구분	위 치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12,064	증)9,987	122,051	◦면적 증가율 8.9% (9.987/112.064*100)
①	관광휴양시설용지 (소계)	—	39,370	증)20,487	59,857	
①-1	콘도미니엄	정동진리50-14번지	10,315	증)8,382	18,697	◦용도변경 호텔⇒콘도미니엄
①-2	가족호텔	정동진리50-11번지	19,340	증)856	20,196	
①-3	워터파크	정동진리50-11번지	9,715	감)9,715	—	폐지
①-4	생활형숙박시설1	정동진리50-9번지	—	증)11,157	11,157	신설
①-5	생활형숙박시설2	정동진리50-14번지	—	증)9,807	9,807	신설
②	공공시설용지 (소계)	—	28,513	감)8,740	19,773	
②-1	주차장	정동진리50-37번지	24,870	감)9,370	15,500	
②-2	도로	정동진리50-10번지	3,128	증)249	3,377	
②-4	오수처리시설	정동진리50-9번지	515	—	515	
②-5	가스저장소	정동진리50-10번지	—	증)381	381	신설
③	녹지용지 (소계)	—	44,181	감)1,760	42,421	
③-1	원형보전녹지1	정동진리50-13번지	5,488	증)204	5,692	
③-2	원형보전녹지2	정동진리50-7번지	18,306	증)1,044	19,350	
③-3	기타녹지1	정동진리50-10번지	13,420	감)10,297	3,123	
③-4	기타녹지2	정동진리50-10번지	—	증)676	676	신설
③-5	기타녹지3	정동진리52-2번지	1,662	증)251	1,913	
③-6	기타녹지4	정동진리50-144번지	—	증)3,362	3,362	신설
③-7	기타녹지5	정동진리50-8번지	1,785	증)502	2,287	
③-8	원형보전녹지3	정동진리50-11번지	1,950	증)220	2,170	
③-9	원형보전녹지4	정동진리50-11번지	1,570	증)38	1,608	
③-10	원형보전녹지5	정동진리50-97번지	—	증)2,240	2,240	신설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항 목	계 획 내 용	비고
기 정	①- 1	강동면 정동진리 50-14	용 도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15호시설 중 관광호텔 (호텔)	
			건폐율	45%이하	
			용적률	190%이하	
			높 이	지상11층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유람선형숙박,평지붕	
			색 채	해안경관에 어울리는 명암이 밝은색	
변 경	①- 1	강동면 정동진리 50-14	용 도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15호 중 관광숙박시설	
			건폐율	45%이하	
			용적률	190%이하	
			높 이	지상11층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유람선형숙박,평지붕	
			색 채	해안경관에 어울리는 명암이 밝은색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항 목	계 획 내 용	비고
기 정	①- 2	강동면 정동진리 50-11	용 도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15호 중 관광숙박시설	3동
			건폐율	30.00%이하	
			용적률	90.00%이하	
			높 이	지상10층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유람선형숙박, 평지붕	
			색 채	해안자연경관에 어울리는 시각적 순환관계를 고려한 유사색채와 상징적인 지붕색	
신 설	①- 4	강동면 정동진리 50-9	용 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건폐율	40.00%이하	
			용적률	190.00%이하	
			높 이	지상10층이하, 시설물 높이 50m이하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3-14)에 의거 건축물 및 시설물 높이에 대해 공동위원회가 인정한 사항임)	

신 설	①- 5	강동면 정동진리 50-14	길 이	건축물 길이 160m이내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3-14)에 의거 건축물의 길이에 대해 공동위원회가 인정한 사항임)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유람선형숙박, 평지붕	
			색 채	해안자연경관에 어울리는 시각적 순환관계를 고려한 유사색채와 상징적인 지붕색	
			용 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지상10층이하, 시설물 높이 50m이하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3-14)에 의거 건축물 및 시설물 높이에 대해 공동위원회가 인정한 사항임)	
			길 이	건축물 길이 160m이내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3-14)에 의거 건축물의 길이에 대해 공동위원회가 인정한 사항임)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유람선형숙박, 평지붕	
			색 채	해안경관에 어울리는 명암이 밝은색	

영월군 공고 제2024-19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해제(안) 열람 공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영월군 고시 제2021-256호 (2021.11.16.)로 지정 고시된 “영월 광물자원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을 아래와 같이 지정 해제 하고자 합니다.
2. 이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하오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해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우리군 도시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7일

영 월 군 수

1. 해제지역

- 명 칭 : 영월 광물자원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위 치 : 영월군 산솔면 화원리 476-4번지 일원
- 면 적 : 301,643㎡

2. 해제시기

- 제한지역 지정일 : 2021. 11. 16.
- 제한지역 해제일 : 2024. 02. 22.

3. 해제사유

- 광물자원 특화단지 조성사업 후보지 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4. 관계도서 : 게재 생략(영월군청 도시과 비치)

5. 기타

-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영월군청 도시과(☎033-370-2872)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13일간, 09:00 ~ 18:00, 토·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접수 우편접수는 등기우편만 가능(마감일자 소인 유효)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항 목	계 획 내 용	비고
신 설	③- 6	강동면 정동진리 50-144	용 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의 공원시설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3-14)에 의거 녹지용지내 시설물 행위제한에 대해 공동위원회가 인정한 사항임)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60%이하	
			높 이	지상2층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색 채		